정책연구보고서 2011-24

대전시와 라오스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

황혜란 · 김기희 · 조원권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황혜란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조원권 / 우송대학교 제2학사 부총장

요 약

■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점차 개방적이고,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음. 라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영세한 수준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현황에 관심이 필요함. 또한 라오스는 '07년 대전시와 루앙프라방주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라오스 경제 현황분석을 통해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대전시와 라오스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대전시와 라오스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도출 및 파악하는 기초가 되는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였음.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대전시와 라오스 간 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협력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기술하였음.

■ 대전시와 라오스 간 교류는 2004년 4월 4일부터 10일 사이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H.E. Somsavat LENSAVAD)의 대전시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이후 라오스 교육부장관(H.E. Phimmasone LEUANGKHAMMA, 2004. 6. 14 - 6. 16), 라오스 정부관계자 대전시 방문(2006. 10. 23), 라오스 교육부관계자 대전시 방문(2006. 12. 7), 대전시 관계자 루앙프라방주 방문(2007. 2. 1 - 2. 3), 루앙프라방주 관계자 대전시 방문(2008. 6. 10 - 6. 14)을 통해 우리나라(대전시)와 라오스 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음. 특히 우송대학교는 강원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와 공동

으로 프로젝트(2005. 7 ~ 2007. 11(개교일: 2008년 2월 18일))를 수행하여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현 수파노봉대학교, 라오스 루앙프라방 북쪽 6Km지점에 위치)를 설립하였으며, 프로젝트 완공 후 현재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후속협력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라오스 내 교수역량강화 차원의 우송대학교 내 교수연수(석사)과정운영을 통한 학위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경영학 교수 파견지도 활동, 컴퓨터 및 도서 기증, 학교발전기금 기부, KOICA, KADO 등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 학회 협력지원은 대표적인 사후협력지원활동임. 이외 배재대도 수파노봉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우송대학교는 강원대학교와 협력하여 GKS장학생으로 온 수파노봉대학교 교수대상으로 농촌체험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정신을 전수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95년 10월 25일 외교관계 재 수교하였음.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74년 6월 22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1975년 7월 25일 라오스의 공산정권수립과 동시에 단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ASEAN과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와 외교관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1996년 9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개설 및 '01년 1월 주한 라오스대사관 개설하였음. 양국은 외교관계 재수립 이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6), 투자보장협정(1996),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06)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08년 10월 1일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었음.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교역 규모는 '10년 1억 3,200만 달러로 '09년 대비 74.8% 증가하였음. '10년 중 라오스의 총 대외교역 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09년에 비해 0.7% 증가하였음. 2001년-2009년 간 대 라오스 누적 투자는 4억 4천 5백만 달러, 프로젝트 수는 총 142건 이었으며, 주요 투자부문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순이었음. '10년 12월말 현재 산업별 누적 투자액은 건설업 6,376만 달러(40%), 도매 및 소매업 3,998만 달러(25.1%), 금융 및 보험업 2,291만 달러(1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70만 달러(6.7), 그리고 농업부문은 509만 달러(3.2%)였음.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돕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0년말 승인된 누계 기준 총 8건, 1,622억 원(세계 12위 EDCF 지원국가)이며, 주요 지원사업은 송전사업, 도로 개선사업, 교육 및 의료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등임.

■ 연평균 7%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륙국가라는 입지적 악조건과 인구 약 7백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력발전과 금·구리 등 광물자원, 및 농업 생물다양성,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고성장하고 있음.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09년 2월 기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장기경제정책인 '신경제제도' 수립하여 '20년까지 세계최빈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 하에 인적자본 육성, 농촌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전농업 금지, 대외경제관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8대 중점육성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라오스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외 산업(소매업 및 광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그렇지만,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농업중심에서 2차/3차 산업으로의 구조변환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그렇지만, 농림수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라오스 면적의 1/2정도(약 250만 ha)가 경작이 가능하지만, 경작률이 매우 낮으며(약 20% 정도로 추정됨), 경작지 중 약 80%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에서 사탕수수,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 감자, 파인애플, 담배, 땅콩, 면화, 커피, 대두, 튜버(tubers, Starchy root crops), 녹두 등의 순으로 경작. 인접 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의 수요증가로 인해 라오스의 농산물 생산과 공급량은 지속적 증가가능성이 매우 큼. 가축은 물소, 돼지, 소, 염소 등이 주로 사육되고 있음. 대부분의 농산물은 원료형태로 수출되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에 절대 의존하고 있음. 사료와 축산에 필요한 보조품(비타민, 미네랄 등)도 전량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물 펌프, 기타 관계용 장비, 트랙터 및 경운기, 분쇄기, 건조기, 포장기기 등과 같은 농자재(Agricultural production inputs), 비료, 농약, 종자 및 기타 투입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이러한 수요는 딜러(dealers)에 의해 충족되고 있으며, 비료의 경우는 전량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함. 그렇지만, 임산물(원목, 합판 등)은 라오스의 대표산물이며, 국가차원에서 조림을 장려하고 있어 조림사업에 많은 사업기회가 존재함.

■ 농업 이외 산업(소매업 및 광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업은 GDP 중 2006년에 8.2%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8.4%), 2008년 (8.7%), 2009년(10.2)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되는 주요 상품은 커피, 담배, 카사바가루, 소금 등으로 가공정도가 낮은 제품으로 그 종류가 매우 적음. 특히,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food processing sector)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임. 일부 대형 사업을 제외하고 농식품 가공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는 매우 미흡함. 농산물 대부분이 원료 형태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국경을 넘어 중국,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밀수출됨.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 심지어는 가공된 대두, 다른 투입재 같은 중간재를 수입·소비하는 실정. 그나마 라오스 국내에서 가공되는 주요 제품은 쌀가루, 훈제, 건조,

발효 또는 저린 생선, 반가공 채소와 과일이며, 그것도 소규모 기업에서 가공되며 대부분의 제품은 현지시장에서 판매됨. 라오스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구의 비율을 낮추고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및 가공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는 농산업육성, 제품개발, 농업제품 가공 산업 개발 및 육성, 농업 잉여인력을 축소하여 농업 가공 산업에 투여함으로서 산업 및 경제 발전 도모, 풍부한 농업생물다양성 활용과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광산물이 풍부한 라오스는 광물자원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광물자원 개발, 환경보호 그리고 가공산업의 기초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화 및 현대화의 변화속에서 국민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 」을 제정하여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라오스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유치현황을 보면 전력생산업과 광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그 뒤를 잇고 있음. 2009-2010년 초반기에는 기획투자부에 총 9억 2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104건의 외국인투자신청서가 접수되었음. 라오스는 수력발전을 위한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라오스의 풍부한 지하자원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소임. 또한 8대 중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을 우선투자 산업으로 선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09년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 2000년 이후 중국이 라오스 농업부문 최대투자국이며, 최근 들어 한국의 투자도 증가였음. 게다가 라오스 정부의 건설투자 유치 전략 및 목표와 ADB 등에 의한 대형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부문의 투자 전망도 밝음.

■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라오스는 수출의 약 70%,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10년 라오스의 총 무역규모는 33억 달러로 GDP의 약 51%, ASEAN 10국 중 최하위이며, 2000년 이후 무역수지는 대부분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음.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광물, 비철금속, 봉재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제품 및 광물, 기계류, 비철금속 등임.

■ 라오스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개발 및 산업구조개혁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즉, 대전시와 라오스 간 경제협력의 증진은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라오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시너를 창출할 수 있음. 따라서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라오스 정부가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개발 및 산업구조개혁 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적 협력체제 의 구축이 필요함.

  ○ 첫째, WTA를 활용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대전시의 핵심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대전시의 대 라오스 ODA 협력, 특히 과학기술 협력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지원과 대 라오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대전 소재 대학·연구소・기업(대전소재 기업 및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 간 관·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대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라오스 내 거점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대전시의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정책과

정부의 과학기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대전 소재 대학 및 정부산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국제협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관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기존 파트너십(우송대학교-수파노봉대학교)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음.

○ 셋째,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함. 대전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출 국내기업 및 대전 소재 대학과 대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라오스의 사회개발과 자원개발 정책에 편승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적개발협력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 같음. 이는 라오스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는 과학기술 기반의 공적개발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교류의 물고를 트는 전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위한 소규모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4

Ⅱ. 대전시-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교류 현황 ····· 5

1. 대전시-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교류 내용 ····· 7
2. 우송대학교 - 수파노봉대학교 교류 협력 ····· 12
3.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 학회 협력지원 활동 ····· 16

Ⅲ.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 19

1. 라오스의 국가개요 ····· 21
2.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구조 ····· 25
   1) 경제성장과 정책 ····· 25
   2) 라오스의 산업생산구조 ····· 29
   3) 라오스의 주요 산업 현황 ····· 35
   4) 대 라오스 외국인 투자 현황 ····· 40
   5) 라오스의 대외무역 현황 ····· 56
   6) 한국-라오스 경제협력 현황 ····· 62

Ⅳ.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 ····· 67

1. WTA를 활용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69
2. 라오스 내 거점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70
3.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 71

Ⅴ. 요약 및 결론 ····· 73

<참고문헌> ····· 77

<부록 >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 ····· 79

표 목 차

[표 3-1] 라오스 주별 개요 ····· 24
[표 3-2] 신경제제도의 주요 내용 ····· 27
[표 3-3]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28
[표 3-4] 산업생산구조 ····· 30
[표 3-5] 제품생산현황 ····· 31
[표 3-6] 대 라오스 10대 투자국(2001-2009 누적 투자액 기준) ····· 41
[표 3-7] 산업부문별 대 대 라오스 투자 현황(2001-2009 누적 투자액 기준) ····· 42
[표 3-8] 공공투자현황 ····· 48
[표 3-9] 외국인 투자현황 ····· 50
[표 3-10] 외국인투자시 법인소득세 면제 현황 ····· 55
[표 3-11] 수출입 현황(HS 2-dgit) ····· 58
[표 3-12] 라오스의 대 중국 수출입 현황 ····· 59
[표 3-13] 라오스의 대 한국 수출입 현황 ····· 60
[표 3-14]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입 현황 ····· 61
[표 3-15] 대 라오스 EDCF 지원현황('10년말 기준) ····· 65

그 림 목 차

[그림 -1] 수파노봉대학교 전경 ····· 12
[그림 4-1] 대외원조의 구조 및 재원 ····· 69
[그림 4-2] 라오스내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협력지원 모델 ····· 70
[그림 4-3]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 7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한국은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대개도국 ODA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대전시 입장에서는 최근 개도국 과학기술정책입안자들과 기업CEO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의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전시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대개도국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도시 위상 제고 및 이미지 정립,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점차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음. 라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영세한 수준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 현황에 관심이 필요함

- 또한 라오스는 '07년 대전시와 루앙프라방주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라오스의 산업 및 시장 환경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라오스 관련 문헌 및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라오스 산업 및 시장 현황을 분석

- 한국의 대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현황 및 주요 사업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이 참여가능한 주요 대상 분야를 도출

-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가 라오스를 대상으로 호혜적 경제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이 라오스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시

- 본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05년 이래 루앙프랑방주의 수파노봉대학 설립관련 공적개발원조 (ODA) 프로젝트 수행과 지속적인 Advisory Committee 활동을 통해 활발한 교류협력을 수행해 온 전문가를 활용, 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함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라오스 현지의 산업 및 시장현황에 대한 최신 분석자료 구축을 통한 향후 라오스 진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물 사업화 관련 지역 연구소 및 기업들에게 사전 이해자료 제공

- 대전지역 기업들이 라오스 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와 사업 진출 분야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라오스간 실질적이고 상호발전적 차원의 기술사업화 교류협력 추진모델의 정립과 도시간 유기적인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계 구축

-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물의 개발도상국 확산을 위한 롤 모델로 활용

Ⅱ

대전시와 라오스의 교류 현황

1. 대전시-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교류 내용
2. 우송대학교-수파노봉대학교 교류 협력

Ⅱ. 대전시와 라오스의 교류 현황

1. 대전시-라오스 루앙프라방주 교류 내용

■ **H.E. Somsavat LEN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대전시 방문 (2004. 4. 10) -** 관련 자료(외교통상부 발표문)

제 목 : 한·라오스 외교장관 회담결과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솜사왓 렝사왓]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장관 (H.E. Mr. Somsavat Lengsava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과 4.9(금)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국제정세, 한·아세안 관계, 양국 경제통상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2. 금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반기문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정세, 제2차 6자회담 결과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솜사왓] 장관은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또한 반 장관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솜사왓] 외교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평가하고 라오스 정부로서도 한 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솜사왓] 장관은 우리정부의 경제협력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직업훈련원 건립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지원이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솜사왓] 장관은 금년부터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새로이 파견하는 개발협력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지닌 양국간 경제협력관

계가 보다 증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5. 회담후 양국외교장관은 한·라오스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였으며, [솜사왓] 장관은 금번 경제공동위 설립을 계기로 라오스내 한국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6. [솜사왓] 라오스 외교장관은 4.9(금)-12(월)간 공식 방한중이며 고속철 시승, 대덕과학연구단지 시찰, 인천자유무역지대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목 : 한·라오스 경제공동위원회 설립 약정 서명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솜사왓 랭사와드 (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2004년 4월 9일 금요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였다.
   -서명일시·장소: 2004.4.9.(금) 15:10-15:30, 외교통상부 18층 조약서명실

2. 이번에 체결된 "한·라오스 경제공동위원회 설립 약정"은 지난 1996년 서명, 발효된 "한-라오스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4조에 근거, 경제공동위를 설립하기 위한 정부간 시행약정에 해당하며, 이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간 협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3.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경제공동위원회는 "한-라오스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양국 정부에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공동위원회는 매년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H.E. Phimmasone LEUANGKHAMMA 라오스교육부장관 방한**

(2004. 6. 14 ~ 6. 16)

-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우송학원 방문

■ **라오스 정부관계자 대전시 방문**(2006. 10. 23)

- 방문자

Dr. Sayamang VONGSAK(Vice-President, Lao's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Dr. Khamkhong MANIKHAM(Deputy 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Mr. Bounluan SINGNAKHONE

(Head Luangprabang Province's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Mr. Khamchan SENGCHANSOULIYA(Project Manger, MOE)

Mr. Khamsy MANOLOTH(Official of HTVED, MOE)

Mr. Sengkeo VONGSAKITH(Official of HTVED, MOE)

Dr. Khamphay SISAVANH(Rector, Souphanouvong University)

- 방문사진

■ **라오스 교육부관계자 대전시 방문**(2006. 12. 7)

- 방문자

Dr. Somkoth MEGNOMEK(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Dr. Kongsy SENGMANY
(Director General,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Department)
Mr. Ouam SENGCHANDAVONG
(Director General,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 방문사진

■ **대전시 관계자 루앙프라방주 방문**(2007. 2. 1 ~ 2. 3)

- 방문자

박성효(대전광역시장), 최홍식(국제자문대사), 김창환(투자통상본부장), 정태희(자매도시위원장)정혁(생명공학연구원), 송입섭(대전상공회의소회장), 심현종(대전상공회의소 비서실장), 최상권(대전 3,4공단 이사장), 정성욱(주택건설협회장), 최창우(한의사협회장), 조원권(우송대학교 부총장), 윤희일(경향신문), 백운석(중도일보), 김길석, 조한식,이병연, 조병설 (대전광역시)

[대전시-루앙프라방주 MOU체결]

[생명공학연구원-루앙프라방주 MOU체결]

- 교류내용

- 대전광역시 : 루앙프라방주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약
  컴퓨터 기증
  루앙프라방주 관계자 대전방문시 지원
  라오스학교 설립(미화5만달러)
- 생명공학연구원 : 생물자원확보 MOU 체결

■ 루앙프라방주 관계자 대전시 방문(2008. 6. 10 ~ 6. 14)

- 방문자

Dr. Khampheng SAYSOMPHENG(Vice-Governor, LuangPrabang Province/ Chairman of Luang Prabang Steering Committee of the Project)
Dr. Sayamang VONGSAK
(Vice-President, Lao's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Chairman of Lao Experts Committee of the Project)
Dr. Khamphay SISAVANH(Rector, Souphanouvong University
Dr. Bouakhong NAMVONG(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Dr. Khamkhong MANIKHAM(Dep. Head, LuangPrabang Province's Cabinet
Mr. Bounluan SINGNAKHONE(Head LuangPrabang Province's Planning

and Cooperation Department

Mr. KhamchanSENGCHANSOULIYA(Project Manger, MOE

Mr. Khamsy MANOLOTH(Official of HTVED, MOE

Mr. Sengkeo VONGSAKITH(Official of HTVED, MOE

2. 우송대학교 - 수파노봉대학교 교류 협력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현 수파노봉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후속 협력지원 활동 (프로젝트 완공 이후)

■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소개

위 치 : 라오스 루앙프라방 북쪽 6Km지점

시 행 처 : 라오스 교육부

프로젝트 참여기관 : 우송대학교, 강원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프로젝트 기간 : 2005. 7 ~ 2007. 11(개교일: 2008년 2월 18일)

[그림-1] 수파노봉대학교 전경

<프로젝트 참여 기관 후속협력 지원 활동 내용>

◈ 프로젝트 수행 및 후속협력 구도 (교육분야)

기관명	사업내용	후속지원내용	비 고
우송 대학교	- 6개공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교사 연수 - 전문가 파견	- 석사학위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교수공동연수 수행 - 전문가 단기 파견 - KOICA, KADO 등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MOU (2006.10.23) 후속협력지원계획서 (2007.11.28)
강원 대학교	- 3개 공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교사 연수 - 전문가 파견	- 석사학위 취득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 교수공동연수 수행 및 겸임교수 참여 확대 - 전문가 단기 파견 - KOICA, 농촌진흥 등 외부기관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MOU (2006.10.25) 후속협력지원계획서 (2007.11.28)
전주 대학교	- 학교 행정 시스템 컨설팅 - 직원 연수 - 학교 행정 전문가 파견	- 학교운영시스템 및 운영전략에 관한 자문 - EMS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자문 - 산학연 관련 사업 자문 - 한지원료 수입관련 프로젝트 수행 시 협력방안 모색	MOU (2006.10.27) 후속협력지원계획서 (2007.11.28)

학교 법인 폴리텍 대학	- 자격 검정, 직업훈련 컨설팅 - 자격 검정,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	- 직업교육훈련 운영 관련 자문 - 전문가 단기 파견	MOU (2006.10.24) 후속협력지원계획서 (2007.11.28)
시너지 비전 연구소	- Expert Work & Fellowship Training 총괄 관리 - 학교운영 컨설팅	- 석사학위 취득 및 우수학생 지원 - 학교운영 전문가 단기 파견 - 한국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와의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	MOU (2007.11.28)

◈ **석사과정 장학지원**

지원 기관	내 용	비 고
우송 대학교	- 프로젝트 기간 중 연수과정을 대학원 12학점 취득 인정 및 파견 연수 교수 4명을 대학원 입학허가절차를 받아 석사학위 취득(4명, 2009년 8월)	국제경영, 관광경영, IT경영, 건축 각1명
강원 대학교	- 프로젝트 기간 중 연수과정을 대학원 1학기 인정 및 파견 연수 교수 4명을 대학원 복학 -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3명, 2009년 8월) - 현재 Mr. Boummy Keohavong 박사과정 중(1 명)	농학 2명, 축산 1명
시너지 비전 연구소	- 연수 교수 한국 내 체류 중 생활지원	

◈ 전문가 파견 지도

지원 기관	내 용	비 고
우송 대학교	- 경영학 교수 파견지도 활동 (파견기간 : 2007. 9. 1 ~ 2008. 12. 31)	
강원 대학교	- 축산학, 산림자원학 교수 파견지도 활동 (파견기간 : 2008.1.24~2.1) - 농학 교수 파견지도 활동 (파견기간 : 2010. 1. 13 ~ 1. 16)	
전주 대학교	- 한국어, 영어 교수 파견지도 활동 (파견기간 : 2008. 1. 1 ~ 12. 31)	
학교 법인 폴리텍 대학	- 직업교육훈련분야 교수 파견 (파견기간 : 2009. 7. 5 ~ 7.11)	
시너지 비전 연구소	- 수파노봉대학교 경영학, 한국어 및 영어 강의 교수 파견 체류비 지원 - 한국어 협력센터 Director 활동 지원 - 학교 운영자문 전문가 파견 (2008. 8. / 2010. 1) - 도서관 운영 자문 전문가 파견 (2009.1.25~2.1)	참여 대학 협력

◈ 기증 및 장학금

구 분	내 용	지 원 기 관
Donation	컴퓨터 및 도서 기증	시너지비전연구소, 우송대학교, 강원대학교, 포스데이타
장학금	학교발전기금(USD20,000.-)	시너지비전연구소

3.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 학회 협력지원 활동

◈ 정부-중앙, 지방

협력 기관	내 용	비 고
교육 과학 기술부	- 라오스 프로젝트의 후속지원 사업제안서 작성 (책임연구원 - 조원권)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농업생명과학 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책임연구원 - 조원권, 박철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한국교육 개발원 우송대학교, 강원대학교
대전시	- 루앙프라방주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약 - 컴퓨터 기증 - 루앙프라방 주지사 및 정부관계자 대전 방문시 지원 - 대전시 기업인 후원금(미화5만달러)으로 라오스 학교 설립	

◈ 출연기관

협력 기관	내 용	비 고
국립 국제 교육원	2009년도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9명(2009년 8월말 입국) - 석사과정 : 1년(한국어 교육) + 2년(학위 과정) - 한국어 교육 (배재대학교 수학 중) - 우송대학교, 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진학 ・장학생 명단 Mr. Chahue Yangsansay Mr. Xay Bounphong Mr. Kalaphat Kounlaxay Mr. Sinlapasay Sengdala Ms. Phisouda Sivilay Mr. Vinath Mekthanavanh Mr. Khamphouguen Siphaxay Mr. Sinthanou Phanthavong Mr. Phouphanouh phanthavong - 항공료, 입학금, 등록금 및 월 90만원지원(기숙사비 포함)	교육 과학 기술부

	2010년도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3명: 우송대 1명, 강원대 2명 입학 예정(2010년 9월) - 석사 : 1년(한국어교육) + 2년(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 : 1년(한국어교육) + 4년(학위과정)	
한국 연구 재단	2009년도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기관협력사업 (TPC) - 사업명 : 농업 Bio 및 ICT 중심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센터 구축 - 수행구도 : 강원대학교(농업 BIO 분야), 우송대학교(ICT 분야), 수파노봉대학교 협력	교육 과학 기술부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 연수초청 및 라오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세미나 참석 (수파노봉대학교 캄찬 부총장)	
한국 교육 개발원	- 교육수요 연구조사 사업 참여 및 국제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교 총장	
한국 정보화 진흥원	- 컴퓨터 기증 : 200대 기증 (회당 100대, 2회) - 청년봉사단: 2개팀 (8명) 파견 IT 및 한국어 교육 봉사	우송 대학교
국제 과학 기술 협력 재단	봉사단 2명 파견 (분야 : 농학 및 컴퓨터) - TPC	
한국 중앙 도서관	수파노봉대학교 도서관 사서 (Mr. Charatphong BONGSILCHITDARA) 2개월간 연수지원	

◈ 연구소

협력기관	내 용	비 고
생명공학 연구원	수파노봉대학교와의 MOU (생물자원확보)	

◈ 학회

협력기관	내 용	비 고
서울 행정학회	2007년 12월 수파노봉대학교에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학술 진흥재단 후원
한국 새마을 학회	- 라오스 지역개발과 대학의 역할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교 총장) - 라오스 지역개발 세미나 참석 (라오스 수파노봉 대학교 총장, 2009년 9월 말)	
농어업 특별대책 위원회	동남아시아 국가와 농업협력방향과 과제 (라오스를 중심으로) 공동 수행 (현지조사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공동연구)	

◈ 대학

협력기관	내 용	비 고
한동대학교	- 수파노봉대학교와의 MOU (2008. 12)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유학생 지원(건축학 전공)	
배재대학교	- 한국어교육센터 지원(2010. 10 MOU 체결)	
창원대학교	- 교육 교류 협력 (2010. 10 MOU 체결)	
숭실대학교	- 교육 교류 협력 (2010. 10 MOU 체결)	

※ 우송대학교, 강원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연합회 조직

- GKS장학생으로 온 수파노봉대학교 교수대상으로 농촌체험 등을 통해 새마을 운동정신을 전수함

Ⅲ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1. 라오스의 국가개요
2.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구조

Ⅲ.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 현황 분석

1. 라오스의 국가개요

■ 역사

○ 라오족은 8세기 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 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제민족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우는 호족정치체가 성립됨.

○ 13세기 경 비엔티안은 현재의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하는 란나국의 세력 하에 있었으나, 태국 중부 아유타야국의 압력으로 란나국이 쇠하자 팡움(Fangum)왕이 이를 차지하였으며, 팡움 왕은 크메르 제국의 쇠퇴를 틈타 쌈느아, 씨엥쿠앙, 참파삭 등지까지 정복하여, 1353년 이들 지역을 통일한 란쌍(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왕국을 건설함.

○ 란쌍왕국은 면적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그 판도가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러, 란쌍왕국은 지금도 라오스 영광의 상징으로 남아있음.

○ 란쌍왕국은 내분 및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쇠퇴하였으며, 1560년에는 루앙프라방으로부터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으나, 18세기 초에는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안(중부) 및 참파삭(남부) 등을 중심으로 세 왕국으로 분열됨.

○ 비엔티안 왕국은 18세기 말경까지는 태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으나, 1820년대에 베트남의 압력을 업고 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이에 실패하여 비엔티안까지 유린당하는 화를 입기도 함.

- 현재 방콕의 왕궁사원에 있는 에머럴드 불상은 이때 비엔티안에서 약탈된 것으로 알려짐.

- 19세기 말엽까지는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및 참파삭 세 왕국이 모두 태국(시암 왕국)의 속국이 됨.

○ 1893-1907년 사이에 맺어진 프랑스-태국 간의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인 현재의 라오스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잠시 일본의 군사지배 하에 있다가 1954년 프랑스와 라오스간의 조약에 따라 완전 독립이 인정됨.

○ 독립 후에도 국내의 좌파, 중립파, 우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전이 이어졌으며, 1962년 제네바 조약의 성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친서방의 비엔티안정부(왕정)와 좌파 '파테트 라오(라오인민혁명당)'간의 항쟁이 격화됨.

○ 1973년 미국-베트남 간의 파리 평화협정 성립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정전협정이 맺어져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그후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라오스에서도 '라오인민혁명당'이 이끄는 '라오스 애국전선'이 실권을 장악, 사실상의 무혈혁명으로 같은 해 12월2일 현재의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성립되었음.

■ 일반개요

○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

○ 면적: 236,800 ㎢, 한반도의 약 1.1

○ 위　치: 북위 14.1～22.3도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

- 동　쪽: 베트남(2,130Km), 서쪽: 태국(1,754Km)

- 남　쪽: 캄보디아(541Km), 북쪽: 중국(423Km)

- 북서쪽: 미얀마(235Km) 등 5개국과 접경

○ 정체: 공화국(대통령제)

○ 의회: 단원제(의원정수 109명, 임기 5년)

○ 수도: Vientiane(인구: '09년 현재 약75만명)

○ 인구: 680만명('09 추정치)

- 인구성장률: 2.316%
- 출생률: 33.94명/1,000명
- 사망률: 10.76명/1,000명
- 이민률: 0명/1,000명
- 연령구성(인구구성 연령대가 낮은 젊은 국가임)
  0-14세: 40.8%(남: 1,400,126명, 여: 1,386,480명)
  15-64세: 56.1%(남: 1,898,995명, 여: 1,936,892명)
  65세 이상: 3.1%(남: 92,070명, 여: 120,379명)
- 성비(총인구: 0.98(남)/여)
  출생시: 1.05명(남)/여
  14세 미만: 1.01명(남)/여
  15-64세: 0.98명(남)/여
  65세 이상: 0.76명(남)/여
- 영아사망률: 77.82명(사망)/1,000명(생존)
- 평균수명(총인구: 56.68세): 남(54.56세), 여(58.9세)

○ 국경일: 12. 2(건국 기념일)

○ 기후: 연 평균 기온은 26.5도

- 최고 기온은 4월로 30.2도, 최저 기온은 12월로 21.8도)

[표 3-1] 라오스 주별 개요

번호	주명	주도	면적(km^2)	인구(명)
1	Attapeu	Attapeu	10,320	114,300
2	Bokeo	Ban Houayxay	6,196	149,700
3	Bolikhamsai	Paksan	14,863	214,900
4	Champasak	Pakse	15,415	575,600
5	Hua Phan	Xam Neua	16,500	322,200
6	Khammouane	Thakhek	16,315	358,800
7	Luang Namtha	Luang Namtha	9,325	150,100
8	Luang Phrabang	Luang Phrabang	16,875	419,800
9	Oudomxay	Muang Xay	15,370	275,300
10	Phongsali	Phongsali	16,270	199,900
11	Sainyabuli	Sainyabuli	16,389	382,200
12	Salavan	Salavan	10,691	336,600
13	Savannakhet	Savannakhet	21,774	754,000
14	Sekong	Sekong	7,665	83,600
15	Vientiane Prefecture	Vientiane	3,920	726,000
16	Vientiane Province	Muang Phon-Hong	15,927	373,700
17	Xieng Khaung	Phonsavan	15,880	37

○ 민족: 100여개 민족으로 구성

- Lao 55%, Khmu 11%, Hmong 8%, Vietnamese 2%, 기타(100개 이상의 소수민족) 26%

○ 언어: 라오스어는 성조가 있는 말로서 태국어와 유사

○ 종교: 인구의 약 67%가 불교도이고, 기독교 1.5%, 기타(31.5%)

○ 문맹률

- 15세 이상은 읽기/쓰기 가능

- 총인구 중 68.7% 읽기/쓰기 가능(남: 77%, 여: 60.9%)

○ 주요도시: Vientiane(수도), Savannakhet, Pakse, Luang Prabang(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지정 도시) 등

2.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구조

* **라오스 관련 부처**(Lao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등)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와 각종 국제기구(UNTCAD PC-TAS CD-ROM, ADB 등)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오차가 있음.

1) 경제성장과 정책

■ **최근 연평균 7%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2007년(7.5%), 2008년(7.6%), 2009년(7.0%, 예측치), 2010년(7.9%, 전망치)

※ 물가상승률: 2007년(4.5%), 2008년(7.6%), 2009년(0.0%, 예측치), 2010년(5.4%, 전망치)

○ 내륙국가라는 입지적 악조건과 인구 약 7백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수력발전과 금·구리 등 광물자원, 및 농업생물다양성,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으로 고성장.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독자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 2008년에는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금 등 광물의 수출 호조와

도로, 다리, 전력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에 따른 건설업 성장,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09년에는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품목만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7%로 둔화. 하지만, 라오스는 다른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국제무역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올림픽(SEA Games)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비엔티안(Vientiane) 수도 지정 4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정부지출로 국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충격이 완화
- 국제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입 증가, 2009년 경기침체로 지연되었던 Nam Theun 1 및 Nam Ou 프로젝트 등 수출목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개, 광산 등 천연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 및 세계경지 회복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라오스는 2010년 전년대비 약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

○ 향후 5개년('11년-'15년) 국가개발계획을 세우고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

■ '09년 2월 기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장기경제정책인 '신경제제도' 수립

○ '20년까지 세계최빈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 목표하에 8대 중점육성사업을 선정

○ 대 중점육성사업으로는 인적자본 육성, 농촌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전농업 금지, 대외경제관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대

[표 3-2] 신경제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경제운용 목표	- '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오명에서 탈피 - 도시와 농촌간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농업·임업·공업·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추구
기본 방침	-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서방 자본유치 및 원조 확대 -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 시장경제화의 지속적 추진 - 국내 산업개발 촉진
경제개발전략	- 1단계: 신경제제도확립 - 2단계: 경제구조조정 및 역량 축적 - 3단계: 국민중심의 지속개발

■ 경제개발의 기본 방향

○ 인프라 확충과 생산성 향상, 사회개발을 통한 경제 안정 유지 및 통합적인 지역개발 추진

- 생활수준향상, 특히 산악지역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수준 보장
- 견실한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정치적 안정 도모
- 세수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경제개발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친환경적 수력발전소 건설 및 교통·통신망 구축

○ 시장경제로의 지속적 정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중부지역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개발계획 시행

○ 산업지구 설립과 협동농장개선을 통한 기술향상 및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 계획경제의 잔재 청산을 통한 민간기업 진흥 도모

○ 외국과의 경제협력강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문화·복지 수준 향상

○ 집중개발지역 선정, 수출 및 관광산업 집중 육성

○ 무역·투자제도, 세제·은행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GDP 규모로 볼 때, 라오스는 ASEAN 10국(Brunei, Singapore,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 Nam) 중에서 최빈국**

○ 라오스의 '10년 GDP는 63억 달러('09년 기준 추정치) ASEAN 10국 중에서 최빈국

- 1인당 GDP는 984달러('09년 기준 추정치)로 ASEAN 10국 중에서 7위국
- 라오스의 1인당 GDP는 중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임금 4,636달러(30,700위엔, '10년말 환율 적용)보다 낮음

■ **'10년 4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하 '제7차 계획: 2011-2015')을 승인함으로서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짐**

[표 3-3]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연 도	주요 내용	
2011년	- ASEAN 고속철도(중국-싱가포르) 건설 - 라오스 구간(400km), 공사착공('15년 완공) - 도로증설(920km 목표)	- 10개 수력발전 추가 건설 - 지하자원 개발 가속화 - 외국인 관광객 3백만 명 유치
2012년	- ASEM 정상회의 개최	- WTO 가입(예정)
2014년	- 메콩강 유역(GMS) 물류벨트 건설	
2015년	- ASEM 시장 통합 - UN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	- 경제특구 3개 지역 추가 - 농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으로 다각화 추진

2) 라오스의 산업생산구조

■ 농업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 외 산업(소매업 및 광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그렇지만,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농업중심에서 2차/3차 산업으로의 구조변환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농업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그렇지만, 농림수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09년 GDP 구성 순위로 볼 때, 라오스경제는 농업(23.8%)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매업(19.6%), 광업(10/2%), 운송/통신업(4.9%), 건설업(4.8%) 등의 순임(<표 4> 산업생산구조 참조).

- GDP 중 농업이 2006년(24.7%), 2007년(23.3%), 2008년(22.6%), 2009년(23.8%)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감소되는 추세임.

■ 개방개혁 이후 관광객 급증과 외국인투자 증가, 도시화 가속에 따른 이농현상 등으로 농업 비중 감소

○ 농림수산업 비중이 1991년 57.4% → ’01년 42.9% → ’09년 30.5%로 감소

○ 지정학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에 연해있는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차 산업 발달이 저조함

- 2010년 ADB, ’Economic Data’, 2010에 의하면 ’09년 라오스의 2차 산업 비중은 25.0%로 태국(46.6%), 베트남(41.6%), 캄보디아(26.8%)에 비해 낮음

[표 3-4] 산업생산구조

Gross Domestics Products (GDP) by activity at current price(mill. kip)					Share of Gross Domestics Products (GDP) by Industrial Origin at Current Price (Percent)				
Sector		Primary Revise	Primary Estimate	Primary Estimate	Sector		Primary Revise	Primary Estimate	Primary Estimate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0,518,088	12,621,353	13,889,289	14,510,556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31.1	31.2	30.1	30.5
Agriculture and forestry	9,132,408	11,217,236	12,334,548	12,869,084	Agriculture and forestry	27.0	27.7	26.7	27.1
Agrciculture	8,333,770	9,443,959	10,463,781	11,320,214	Agrciculture	24.7	23.3	22.6	23.8
Forestry	798,638	1,773,277	1,870,767	1,548,870	Forestry	2.4	4.4	4.0	3.3
Fishing	1,385,680	1,404,117	1,554,741	1,641,472	Fishing	4.1	3.5	3.4	3.5
Industry	9,387,177	10,723,778	11,953,908	11,668,985	Industry	27.8	26.5	25.9	24.5
Mining and quarrying	4,525,519	4,245,306	4,595,013	3,289,754	Mining and quarrying	13.4	10.5	9.9	6.9
Manufacturing	2,763,510	3,399,432	3,998,754	4,833,230	Manufacturing	8.2	8.4	8.7	10.2
Electricity and water	1,049,563	1,048,292	1,172,881	1,280,628	Electricity and water	3.1	2.6	2.5	2.7
Construction	1,048,585	2,030,748	2,187,259	2,265,373	Construction	3.1	5.0	4.7	4.8
Secondary industries	12,024,789	14,486,725	17,281,815	18,419,863	Secondary industries	35.6	35.8	37.4	38.7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s	6,469,623	7,517,863	8,741,788	9,333,249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s	19.2	18.6	18.9	19.6
Hotels and restaurants	233,176	268,872	301,114	330,517	Hotels and restaurants	0.7	0.7	0.7	0.7
Transport and communication	1,619,249	1,723,585	2,120,044	2,309,587	Transport and communication	4.8	4.3	4.6	4.9
Financial intermediation	483,640	1,126,358	1,483,520	1,619,854	Financial intermediation	1.4	2.8	3.2	3.4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1,147,100	1,319,212	1,456,928	1,493,807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3.4	3.3	3.2	3.1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458,073	668,045	755,254	817,353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1.4	1.7	1.6	1.7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240,883	252,873	299,431	343,592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0.7	0.6	0.6	0.7
Producers of government services	1,373,047	2,264,080	3,084,732	3,472,049	Producers of government services	4.1	5.6	6.7	7.3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 462,529	- 654,162	- 960,997	-1,300,144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	1.4	1.6	-2.1	-2.7
All industries at basic prices	31,467,525	37,831,857	43,125,012	44,599,404	All industries at basic prices	93.1	93.5	93.3	93.8
Taxes on products and Import duties, net	2,314,514	2,635,226	3,089,700	2,962,763	Taxes on products and Import duties, net	6.9	6.5	6.7	6.2
GDP at market prices	33,782,038	40,467,082	46,214,712	47,562,167	GDP at market prices	100	100.0	100.0	100.0

자료: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표 3-5] 제품생산현황

Products	Unit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ood and taboco														
Processing of meat		…	…	…	4,400	4,700	4,750	4,800	5,800.0	6,200.0	10,426.8	11,237.0	12,625.0	12,912.5
Candies and bread	톤	158	155	680	950	1 220	1,250	1,300	1,400.0	1,500.0	2,516.6	2,715.0	3,012.5	3,412.5
Fish sauce	천톤	1.9	1.2	1	4	4	4	4	3.6	3.8	3.2	3.5	3.7	3.9
Noodle	톤	126.5	…	225	550	674	680	690	720.0	800.0	2,400.1	2,448.0	2,625.0	2,912.5
Animal feed	천톤	3.7	2.5	3	13	13	20	21	11.5	12.0	13.5	58.5	77.5	75.0
Salt	천톤	10.2	11.6	11	19	21	22	22	25.0	19.0	20.8	24.9	25.1	27.7
Fermented	톤	150	277.1	280	500	530	540	550	600.0	650.0	815.0	801.0	811.3	844.3
Ice	천톤	12.3	13.7	29	68	82	83	85	110.0	125.0	162.6	219.0	231.3	249.3
Drinking water	십만리터	…	…	87	1,650	1 850	1,925	1,980	4,100.0	4,800.0	7,689.8	6,578.0	8,112.5	8,979.7
Liquor	십만리터	0.6	1.7	1	3	3	3	3	3.4	3.5	5.8	6.9	7.1	7.4
Beer	십만리터	19.1	43	151	480	576	652	702	826.9	927.0	1,058.8	1,208.8	1,362.5	1,391.3
Soft drinks	십만리터	7.3	38.5	105	115	142	148	164	187.0	194.0	240.2	256.7	270.1	272.8
Coffee	톤	3	8	48	200	193	223	228	245.0	250.0	520.0	466.0	525.0	541.3
Cigarettes	배만팩	15.8	30	53	41	41	55	68	84.4	104.6	116.6	124.3	136.1	136.6
Tobacco	천톤	…	…	813	1,100	358	593	947	1,897.0	3,080.0	3,836.3	3,991.0	4,737.5	5,063.0
Cassava Flour	톤	…	…	…	…	…	…	…	…	…	…	…	7,681.5	10,275.0
Polished Rice	톤	…	…	…	…	…	…	…	…	…	…	579,068.0	616,000.0	638,750.0
Vegetables and Fruits	천kip	…	…	…	…	…	…	…	…	…	…	40,500.0	52,750.0	57,647.5
Sugar	톤	…	…	…	…	…	…	…	…	…	…	1,200.0	1,612.5	3,025.0

<표계속>

Products	Unit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Mining, mineral products														
Lead	톤	430	480	634	470	816	615	840	668.0	787.0	809.0	1 109.0	…	…
Tin	톤												551.3	489.7
Barith	천톤	…	…	2	3	4	6	4	13.6	14.4	6.5	1.0	1.0	12.5
Coal lignife	천톤	…	…	23	300	210	270	250	300.0	320.0	319.2	681.7	379.2	466.1
Stink coal	톤	…	…	77	253	230	100	41	...	...	...	...		
Gypsum	천톤	100	80	124	190	150	99	98	236.0	239.0	260.1	232.3	337.3	761.3
Gravel	천m3	…	…	…	460	640	665	690	850.0	900.0	900.2	943.0	360.0	385.5
Sand	천m3	…	…	…	300	483	520	535	800.0	850.0	700.0	920.0	680.0	702.8
Coal entasige	천톤	…	…	…	…	…	31	41	46.0	50.5	62.0	80.0	104.7	101.4
Zine	톤	…	…	…	…	…	4,000	6,000	11,000.0	10,000.0	4,000.0	12,116.0	7,900.0	5,000.0
Lamestone	톤	…	…	…	…	…	100	100	410.0	420.0	430,000.0	450,000.0	506,700.0	737,203.0
Gold	킬로그램	…	…	…	…	…	…	8,900	7,000.0	31,000.0	60,758.0	62,621.0	5,809.9	5,463.4
Coper	킬로그램	…	…	…	…	…	…	…	…	2,571.0	2,249.0	2,350.0	63,539.5	67,570.9
Coper	톤												102,666.2	254,179.6
Coper	톤												3,549.9	2,287.0
Lead	톤												2,950.0	2,000.0

<표계속>

Products	Unit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Chemicals														
Oxygen-Acetylene	천tubes	6.8	7.9	17	20	21	21	21	22.8	25.0	99.5	101.8	111.2	114.2
Battery acid	백리터	162	39.6	21	35	40	45	46	50.0	55.0	300.0	305.0	356.3	370.0
Alcohol 90	백리터	236.3	277.1	350	500	550	560	566	650.0	680.0	1,169.5	1,052.0	1,112.5	878.8
Detergent powder	톤	2194	2000	877	750	650	700	710	860.0	880.0	1,082.0	1,255.0	1,612.5	1,712.5
Soap	백만개	1004	1000	459	300	400	400	400	450.0	460.0	1,197.0	1,195.0	1,562.5	1,625.5
Skin shoes	천켤레	…	...	150	300	500	505	520	520.0	520.0	677.7	732.0	877.5	938.0
Leather	톤	…	...	196	290	539	540	550	550.0	600.0	282.0	395.0	512.5	590.0
Drug	백만kip	55.4	659.2	284,1	380,0	4,250	4,388	4,480	5,200.0	5,600.0	8,065.0	9,500.0	10,512.5	13,594.4
Fan	천개	Œ	...	...	400	465	320	330	340.0	350.0	257.4	314.0	332.5	345.5
Vaccins	백만amp	2.3	2	5	7	8	8	8	8.0	8.5	8.0	8.6	9.3	9.4
Paint	톤	…	…	…	590	680	765	785	820.0	900.0	3,180.0	3,125.0	3,662.5	3,963.0
Plastic goods	톤	155.6	281.7	500	4,200	4,350	4,420	4,530	5,200.0	6,000.0	7,451.5	7,383.0	7,625.0	7,750.0
Wood and wood articles														
Timber	천m3	141.5	310.4	820	…	…	…	…	…	…	…	…	…	…
Lumber	천m3	41.7	78.4	289	200	185	192	125	125.0	125.0	158.0	147.6	149.6	151.4
Plywood	천sheets	574	1,000	206,9	2,100	2,200	2,250	1,550	1,300.0	1,320.0	765.0	952.0	996.3	1,009.0
Floor lumber	천m2	32.2	47.1	220	240	230	235	198	200.0	210.0	925.4	915.0	966.3	1,034.0
Furniture	백만kips	47.8	678	…	…	…	…	…	…	…	…	…		
Wood furniture	백만kips	16.9	93.7	133	275	320	345	350	430.0	500.0		…	20,150.0	20,195.0
Rattan furniture	백만kips												2,005.0	2,012.5
Books	백만kips	…	…	…	…	…	…	…	…	…	…	1,786.5	6.1	6.2

<표계속>

Products	Unit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extiles														
Fabrics	천미터	699.9	368.8	365	700	950	1,150	1,200	1,350.0	1,450.0	1,632.7	1,780.0	2,962.0	2,175.5
Clothing	천개	…	863.5	20,460	23,500	31,500	33,830	34,200	37,000.0	38,500.0	68,040.0	47,000.0	52,875.0	51,375.0
Articles of stone, cement, etc														
Bricks	백만개	11.3	21	56	67	87	89	90	120.0	135.0	239.0	2 820.0	266.2	269.0
Concrete	천m3	5.9	12.9										…	…
Gypsum	천톤	100	80										…	…
Blocks	천개	346	121	391	700	950	980	995	1,200.0	400.0	508.0	527.6	3,887.0	4,025.0
Cement	천톤	…	…	59	74	75	263	280	282.0	2,800.0	1,639.2	1,687.3	831.2	918.8
Tiles	천톤	…	…	133	24	45	0	3	2,773.4	215.0	122.5	1,295,000	1,696.2	1,736.3
Chalks	천톤	61.2	75	118	210	220	220	200	210.0	1,250.0	1,626.0	...	…	…
CPAC	sheets												1,362,500	1,425,000
Lime	천톤	…	…	315	600	625	640	650	1,100.0	45.0	74.6	1,603.0	1,725.0	2,000.0
Electric poles	천톤	…	4.6	5	25	43	43	43	43.5	...	...	77.5	78.3	78.7
Base metal articles	천톤												...	...
Agri. tools	천톤	96.3	10	1	3	4	4	4	3.8	4.0	...	...	46,500.0	52,750.0
Tin plates	천톤	88.4	1.5	1	2	2	2	2	2.6	3.0	3.2	3.3	3.6	3.9
Nails	천톤	211.6	114	61	650	740	745	760	900.0	980.0	2,099.1	2,168.0	2,225.0	2,312.5
Electric wire	천톤	474	254	2,192	2,850	...	...	...	...	...	48,493.7	95,000.0	100,500.0	101,125.0
Barbed wire	천톤	3.7	6	8	11	12	12	12	12.5	14.0	25.5	26.0	29.1	29.2
Rod of Iron	톤	…	…	…	…	…	…	…	…	…	26,265.0	23,171.0	23,875.0	25,000.0
Electric power	백만.kwh	919.2	844	1,085	3,678	3,589	3,603	3,179	3,347.5	3,491.7	3,606.1	3,362.4	3,705.2	3,427.9
Water supply	백만.m3	…	25.2	25	43	37	41	67	70.0	72.0	73.5	75.9	77.8	80.6

자료: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3) 라오스의 주요 산업 현황

(1) 농업

■ 라오스 면적의 1/2정도(약 250만 ha)가 경작이 가능한 농지이지만, 경작률이 매우 낮으며(약 20% 정도로 추정됨), 경작지 중 약 80%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에서 사탕수수, 고구마, 옥수수, 카사바, 감자, 파인애플, 담배, 땅콩, 면화, 커피, 대두, 튜버(tubers, Starchy root crops), 녹두 등의 순으로 경작. 인접 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의 수요증가로 인해 라오스의 농산물 생산과 공급량은 지속적 증가가능성이 매우 큼. 가축은 물소, 돼지, 소, 염소 등이 주로 사육되고 있음.

○ 농업지대를 보면, 중남부는 쌀, 북부는 옥수수, 남부는 채소, 커피, 홍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낮은 생산력과 품질, 가공유통체계 미미가 가장 큰 문제점

- 쌀이 주곡으로 다음을 제2의 곡물은 옥수수이며, 최근 커피 등 환금작물을 재배하여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실적은 매우 적음. 그러나 최근 들어 커피, 사탕수수, 연초 등 상업 작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무역거래에서 공정무역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커피, 과일 등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대부분의 농산물은 원료형태로 수출되며,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입에 절대 의존

■ 사료 등(feed milling and livestock production inputs)을 제조하는 기업은 Gld Coin DN (Lao) Co. Ltd.가 유일함.

○ Gld Coin DN (Lao) Co. Ltd.의 사료생산으로 라오스 전체 사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특히 사료의 주 원료인 대두박(soybean meal), 고기 및 뼈부산물(meat and

bone meal), 쌀겨(rice bran), 옥수수(corn)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관련 보조품,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럴과 기타 보조제는 전량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물펌프, 기타 관계용 장비, 트랙터 및 경운기, 분쇄기, 건조기, 포장기기 등과 같은 농자재(Agricultural production inputs), 비료, 농약, 종자 및 기타 투입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이러한 수요는 딜러(dealers)에 의해 충족되고 있으며, 비료의 경우는 전량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함.

■ 임산물은 라오스의 대표 산물이며, 조림사업에 많은 사업기회가 존재함. 주요 산물은 원목(Timber), 제재목(Lumber), 합판(Plywood), 마루판(Fllor lumber), 라탄가구(Rattan funiture), 책(book)임.

○ 주변국가의 목재 및 임산물 수요가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사림자원개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공, 만성적 산불, 효과적인 법률미비, 빈곤과 인구증가에 의한 화전증가 등으로 인해 라오스의 산림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국가차원에서 조림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간 조림면적 및 묘목 생산목표가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지방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1995년 이후 그 계획대비 수행실적은 거의 95% 이상임). 국가적인 조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림용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를 포함하여, 식재한 수목에 재산권, 등록된 조림사업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

○ 라오스의 모든 토지 및 산림은 국유로 국가는 국민에게 이용권을 부여함. 라오스 국민의 경우 최대 30년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최대 50년까지의 기간의 권한을 줌. 게다가 국가는 국가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이용, 양도, 상속하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조림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약 146,600ha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약 66%가 생존하여 현재의 인공림축적을 이루고 있음. Lao-ADB 프로젝트에 따르면, 개별 농부 및 기업이 전체 조림면적의 47.5%를 차지하고, 이들의 조림면적으로 평균 20-30ha임. 소규모 보유자의 조림면적이 가장 많으나 이들의 평균 조림면적은 1.8ha이하에 불과. 기업은 전체 소유자의 1%에 불과하지만 평균조림면적은 200ha로 전체 조림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2) 광업

■ 광산물이 풍부한 라오스는 광물자원개발계획(The action plan of a shor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mineral resources: 2007-2010, 2011-2020)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광물자원 개발, 환경보호 그리고 가공산업의 기초 확립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산업화 및 현대화의 변화속에서 국민의 빈곤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광물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라오스의 에너지광업부는 다양한 개혁작업을 수행 중임. 이에는 광업법, 광물자원정책, 환경규제 및 세법 등의 개혁, 감독, 토지허가관리 그리고 자연 및 사회 환경 관리 등의 관리조직체계 개혁, 광물자원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활동 그리고 광상보존에대한 자금지원,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분권 등이 포함됨.

○ 자원개발 같은 프로젝트는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는 분야임.

[광업진흥정책 개괄]

- 석탄정책
  - 전략적 비축 광산물로서, 국내에서 수력전력을 산업현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탐사 수행 지원
- 금정책
  - 17개 기업에서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광개발은 운영기간 내에는 투자신청 접수 중단
  - 소규모 광산개발 수행 국내기업 보호
- 동정책
  - 현재 탐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어 수행 기간 내 더 이상 투자신청 받지 않음
  - 광업활동의 효율적인 감독 필요. 정부는 채굴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내 동광 부존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질탐사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
- 철정책
  - 철을 대상으로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나, 효과적 관리와 수익 보장 필요
  - 자금력과 많은 경험을 가진 기업 선정
  - 원광으로의 수출을 줄이기 위한 제련 및 제철공장 설립 필요
- 포타슘(Potash)정책
  - 새 허가지역에 대한 신청 접수 중단
- 보크사이트 정책
  - 광상은 남부에서 발견되며, 자금력과 기술을 지닌 기업의 투자기회 존재
  - 알루미늄산업의 발달로 알루미늄 산업단지 조성계획

- 주석정책
  - 주석 채굴권을 가진 기업은 12개로, 추가 투자 신청 일시적 중단
  - 정광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련공장 설립 허가
  - 산업단지 예정지는 북부의 Houaphan과 중부의 Khammoun 주
- 연-아연 정책
  - 정부는 아연광산의 탐사와 개발에 가장 합당한 기업 지속적 선정

(3) 제조업

■ 농업 이외 산업(소매업 및 광업 제외), 특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제조업은 GDP 중 2006년에 8.2%를 차지하였으며, 2007년 (8.4%), 2008년 (8.7%), 2009년(10.2)를 차지하고 있음. 제조되는 주요 상품은 Processing of meat, Candies and bread, Fish sauce, Noodle, Animal feed, Salt, Fermented, Ice, Drinking water, Liquor, Beer, Soft drinks, Coffee, Cigarettes, Tobacco, Cassava Flour, Polished Rice, Vegetables and Fruits, Sugar로 그 종류가 매우 적음.

○ 2006년 당시 제조업은 GDP 구성비중 측면에서 농업의 3/1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거의 1/2 수준으로 그 비중이 증가되었음. 이는 라오스 정부의 제조업활성화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비중과 함께 제조상품의 다양성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라오스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인구의 비율을 낮추고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및 가공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에는 농산업육성, 제품개발, 농업제품 가공 산업 개발 및 육성, 농업 잉여인력을 축소하여 농업 가공 산업에 투여함으로서 산업 및 경제 발전 도모, 풍부한 농업생물다양성 활용과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food processing sector)는 상당히 취약한 분야임. 일부 대형 사업 외 농식품가공산업에 있어서의 투자는 매우 미흡함.

○ 농산물 대부분이 원료 형태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국경을 넘어 중국, 태국 또는 베트남으로 밀수출됨.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 심지어는 가공된 대두, 다른 투입재 같은 중간재를 수입·소비하는 실정.

○ 그나마 라오스 국내에서 가공되는 주요 제품은 쌀가루(milled rice), 훈제/건조/발효 또는 저린 생선(smoked, dried, fermented, or salted fish), 반가공(semi-processed) 채소와 과일이며, 그것도 소규모 기업에서 가공되며 대부분의 제품은 현지시장에서 판매됨.

4) 대 라오스 외국인 투자 현황

(1) 투자 환경

■ 라오스는 농림수산업이 전체 산업의 약 30.5%(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제지원 및 원조가 여전히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를 촉진하고자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 」(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및 2009년 「통합투자촉진법 」(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라오스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Lao P.D.R.)의 단일창구서비스 (One Door Service)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표 3-6] 대 라오스 10대 투자국(2001-2009 누적 투자액 기준)

순위	투자국	프로젝트 수	투자액(백만 US달러)
1	태국	240	2,649
2	중국	341	2,585
3	베트남	211	2,163
4	프랑스	68	454
5	대한민국	142	445
6	일본	42	433
7	인도	6	352
8	호주	32	334
9	말레시아	43	151
10	싱가폴	29	113

자료: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www.investlaos.gov.la

○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지난 8년 동안 승인된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태국이 가장 큰 금액인 미화 26억 4천 9백만 달러를 라오스에 투자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이 차례대로 그 뒤를 잇고 있으나, 2010년 중반기에 보도된 기획투자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초 누계 기준으로 중국이 태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음.

○ 대한민국도 최근 라오스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중반기에 보도된 기획투자부의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초 누계기준으로 전체 투자국 중 프랑스를 제치고 4위를 기록하였음.

■ 분야별로 보면, 전력생산업과 광업이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그 뒤를 잇고 있음. 2009-2010년 초반기에는 기획투자부에 총 9억 2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104건의 외국인투자신청서가 접수되었음.

[표 3-7] 산업부문별 대 대 라오스 투자 현황(2001-2009 누적 투자액 기준)

순위	투자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액(백만 US달러)
1	전력생산업	47	4,153
2	광업	202	3,162
3	서비스업	226	1,402
4	농업	211	1,155
5	제조업	262	1,025
6	상업	133	312
7	건설업	43	288
8	호텔/식당	85	235
9	목재산업	49	118
10	은행업	23	165
11	통신업	5	156
12	의류업	40	30
13	컨설팅	61	21
합계		1,387	22,226

자료: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http://www.investlaos.gov.la

■ 2008년 전까지 공공투자는 주로 통신, 농업 등의 분야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교육, 건강,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전체 투자액 중 약 35%가 교육, 약 18%(건강), 약 16%(사회복지)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9년 기준으로 광업 및 연료부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부문, 농림부문(3위), 수력에너지부문(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부분이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약 91%를 차지하고 있음.

- 광업 및 연료 부문(2009년 기준 전체 FDI 중 46.4%)
- 서비스 부문(2009년 기준 전체 FDI 중 30.2%)
- 농림 부문(2009년 기준 전체 FDI중 8.2%)
- 수력부문(2009년 기준 전체 FDI 중 6.4%)

■ 라오스는 수력발전을 위한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 강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라오스 북동부지역은 산악지형이 많고, 수량이 풍부해 수력발전소 건설의 최적지(연평균 강우량이 약 1,714mm에 달하고 전국의 80% 이상이 산악지대).

■ 라오스는 최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는 수력발전 사업에 집중 투자

- Nam Theun 2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 라오스의 수력발전 계획은 갈수록 대규모화 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이 안정된 수입원으로 부상
- 라오스 정부는 향후 25년 동안 외자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수력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이웃국가에 전력을 판매해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

■ 라오스 정부는 GDP의 32% 수준까지 투자를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10년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자원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제외한 업종은 정부의 투자허가 없이도 가능하게 하였음.

○ 주변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풍부한 전력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음(이들 국가들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최근 ASEAN 중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제조업의 발달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10년 4월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신투자진흥법'을 공포하고 수력발전소 건설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 산악지형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외국인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

○ '10년말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는 12개로 발전설비용량은 1,930.5㎿

- 라오스 정부는 국내 전력공급은 물론 주변의 베트남과 태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 '20년까지 총 39개의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

- '20년까지 총 발전설비용량 목표는 16,877㎿이며,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10개(4,760.6㎿), 기획단계에 있는 발전소 27개(6,993.9㎿), 사업초기화 단계인 발전소는 2개(3,129㎿)임
- 특히,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과 인접한 아타푸를 비롯해 남부 산악지역에 '20년까지 총 13기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

○ 한국은 '11년 2월 현재 기획 및 사업초기화 단계에 있는 발전소 건설에 각각 1건씩 참여 중.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Xepian-Xenamnoy 프로젝트는 민자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형태로 진출 계획

■ 라오스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한 요소임. 라오스 정부는 Lane Xang Minerals Limited Sepon 프로젝트, Phu Bia Mining 프로젝트 추진으로 광업 활성화 도모. 2010년 10월 현재 약 150여개의 외국 광산회사가 투자하여 동, 금, 주석 등의 광산을 개발 및 생산 중

○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호주, 일본 등이 진출하여 광물자원을 개발 중에 있음

○ 한국의 기업은 2010년 말 기준 5개 광종, 6개 사업 진행 중

○ '10년 10월 현재 약 150여개의 외국 광산회사가 투자하여 동, 금, 주석 등의 광산을 개발 및 생산 중

■ 한편, 라오스 정부는 자원개발 분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철도 및 도로 등 인프라 건설

○ 도로의 길이는 13,971km로서 노후하여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포장도로는 3,346km(24%)에 불과. 포장도로도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많고 우기에는 불통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 철도가 부설된 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며, 현재 태국 기업이 Vientiane~Nong Khai 구간의 철도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중에 있음.

○ 라오스 정부는 부족한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음.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이 연간 약 1억 4천 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8대 중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을 우선투자 산업으로 선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09년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 2000년 이후 중국이 라오스 농업부문 최대투자국이며, 최근 들어 한국의 투자도 증가

○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라오스 북부에서 채소, 옥수수, 차, 사탕수수 등의 재배를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투자를 급격히 확대. 옥수수는 사료용이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 2004년 세계적인 고무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받아 중국 기업이 물류가 용이한 라오스 북부지역에서 파라고무나무 재배.

○ 한국은 '10년까지 라오스 농업부문에 508.6만 달러 투자하였으며, 8개의 신규법인 설립. 한국 (주)에코프라임은 '09년 라오스 참파삭주 팍송 지역에 합작회사 EcoPrime Lao Co., Ltd 설립(지분 95%), 동사는 친환경 대두, 옥수수 등을 생산하여 일본 (주)타카노후즈(일본 낫토 생산 전문회사)로 수출

■ 제조업은 가내수공업과 소규모의 가공·조립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공업 시설은 거의 없음

○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외국의류회사들의 투자가 활발

- 현재 라오스의 섬유제품은 EU의 일반특혜관세(GSP: 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품목에 해당되어, 대 EU 수출시 물량제한 및 관세 없음

- 이외 정미, 맥주 및 음료수 등의 생산 증가

■ 라오스 정부의 건설투자 유치 전략 및 목표와 ADB 등에 의한 대형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부문투자 전망이 밝음.

○ 건설시장은 대외개방으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민간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시장 활성화 추세

- 2000년대 초반에는 베트남계 건설업체가 전체 물량의 70~80%를 수주 및 시공

○ 건설부문 투자 규모는 '10년 3.2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약 5.5%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분야에 대한 EDCF9), ODA10) 및 외국인 투자 증가로 건설업 경기 활발

○ 라오스 정부는 제7차 계획 기간('11년~'15년) 중에 15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

- 정부가 추진하는 총 536개 사업 중 389건이 인프라 건설 사업이며, 이중 도로, 병원, 학교 건설에 중점적으로 예산 할당

○ 특히, ADB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 종합개발계획'과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라오스의 은행산업은 개방·개혁 이후에도 국영은행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민간시중은행과 외자은행들의 금융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10년말 현재 라오스에는 11개 외자은행이 진출해 있으나, 규모가 작아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임

- 라오스 금융시장의 최대은행인 라오스 대외무역은행(BCEL: Banque pour le Commerce Exterieur Lao)이 예금 및 대출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라오스 금융시장의 환경은 자금 빈약, 부실채권 비율의 증가 및 수익률 악화, 신용문화의 부재로 주변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그러나 '05년부터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환경은 점차 나아지고 있음

○ '11년 5월 현재 라오스에는 2개의 한국계 은행이 교민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

- '09년 2월 코라오그룹, 군인상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이 공동으로 한국계 최초 은행인 인도차이나은행(Indochina Bank) 설립(인도차이나은행의 자본금은 1,500만 달러이며, 최대주주는 지분 55.6%를 코라오그

룹이 소유; 군인상호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가 500만 달러씩 투자해 각각 20%의 지분을 소유). 인도차이나은행은 주택구입 자금, 리모델링 자금 등에 대한 대출 서비스 중

- '09년 9월 임대주택 전문업체인 부영이 수도 비엔티엔에 '부영 라오은행(BooYoung Lao Bank)'을 설립(부영 라오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1,200만 달러이며, 지분은 한국의 모기업인 ㈜부영이 100% 보유). 주택자금 대출은 물론 주거환경이 낙후된 라오스에 주택을 직접 지어 융자를 제공하는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 운영

■ UNESCO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적 보존지역 등 세계적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2000년대 들어 관광산업이 빠르게 성장

○ 라오스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의 외화수입은 2억 달러 수준으로 '09년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만 명으로 '08년 대비 15.6% 증가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관광산업 침체와 라오스로 들어가는 관문인 태국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방문 관광객은 증가세를 보임

○ 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관광지개발을 목표로 세우고 관광지 관리 및 촉진 정책을 수립

-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 현대화, 도로 건설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을 추진 중

- 관광객은 비엔티안, 참파삭(Champassak),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등 5개 지역에 집중

- 라오스 정부는 '15년까지 연간 3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6억 달러의 관광수입 목표 설정

[표 3-8] 공공투자현황

(단위: 백만 킵스)

Sector	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Total	494	2648	3,141	803	1,199	2,004	70	503	572	93	670	763	760	2,158	2,918
Agriculture	136	188	324	362	108	470	2	...	2	3	...	3	117	304	421
Manufacturing	43	210	252	33	58	91	8	...	8	10	...	10	69	4	73
Communication	158	1,698	1,856	146	607	754	30	415	445	40	553	594	337	938	1,275
Trade	-	-	...	2	...	2	...	...	...	...	...	...	20	...	20
Savannakhet-Seno special economic region	-	-	...	...	...	...	...	...	...	...	...	...	...	...	...
Education	41	158	199	36	107	142	10	39	49	13	52	65	62	329	391
Health	27	170	197	20	49	70	3	...	3	4	...	4	24	213	237
Culture	25	49	73	20	32	52	11	20	30	14	26	40	15	82	97
Social welfare	12	105	117	10	66	76	6	29	35	9	39	47	7	116	123
Normal army	...	...	...	...	...	...	...	...	...	...	...	...	...	...	...
Rural development	...	...	...	...	...	...	...	...	...	...	...	...	...	...	...
Other sectors	53	70	123	174	172	347	739	215	954	985	287	1 273	109	172	281

<표계속>

Sector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8-2009			2009-2010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국내	FDI	합계
Total	305	2,227	2,532	424.3	3,225	3,649	517.45	2,836.01	3,353	637	2,125	2,762	642	2,051	2,694
Agriculture	42	254	296	49.96	387.1	437	63.71	252.87	317	67	164	231	77.3	142.8	2,20.1
Manufacturing	20	7	27	22.14	20.67	42.81	25.5	116.12	142	9	1	10	9.6	-	9.6
Communication	139	1,066	1,206	195.64	1,691.41	1887	199.26	1,318.94	1,518	2	0	2	10.0	-	10.0
Trade	3	58	61	…	…	…	0.5	…	0.5						
Savannakhet-Seno special economic region	0.3	...	0.3	…	…	…	…	…	…	37.2	11	48.5	47.5	9.9	57.3
Education	28	326	354	36.84	610.3	647.1	39.95	693.88	734	166	791	956	184.5	841.2	1,025.7
Health	12	251	263	15.34	184.7	200.1	15.46	101.44	117	54	427	482	52.2	508.4	560.6
Culture	6	84	90	8.97	107.5	116.5	9.08	139.32	148	24	419	443	23.2	292.7	315.9
Social welfare	3	58	61	4.78	40.17	44.95	5.88	82.64	88.5	24	97	121	25.9	104.1	130.0
Normal army	0.17	...	0.17	0.3	…	0.3	0.45	…	0.45	10	88	99	10.5	65.8	76.3
Rural development	...	...	...	…	…	…	…	…	…	1	7	8	3.3	4.6	7.9
Other sectors	51	123	174	90.33	183.2	273.6	157.66	130.8	288	244	120	364	208.4	81.8	290.2

자료: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접근)

[표 3-9]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천달러)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griculture-forestry	Number of projects	3	3	11	4	6	8	19	21	39	43	37	30
	Foreign investment	435.0	4,558.5	87,859.0	4,296.0	6337.7	6,850.0	75,621.5	15,498.96	…	178,723	96,294	281,912.59
	Total	440.0	5,097.0	103,682.4	4,296.0	6395.2	7,000.0	75,704.0	173,52.24	458,518.71	183,839	101,562	289,833.35
Industry and handicraft	Number of projects	4	9	11	22	20	18	37	19	31	s	28	34
	Foreign investment	2,364.0	31,918.0	80,240.8	992,686.9	50,615.5	17,150.8	25,677.8	103,916.40	…	96,093	169,296	148,324.64
	Total	2,394.0	46,027.0	116,240.9	1,312,883.6	64,388.2	22,479.1	35,375.4	14,596.28	122,996.96	134,183	171,447	198,720.29
Wood industry	Number of projects	3	1	…	…	5	4	8	8	3	6	9	2
	Foreign investment	1,504.4	404.4	…	…	4,844.8	2,725.1	8,988.6	5,422.85	…	44,485	18,167	13,634.20
	Total	2,011.0	577.8	…	…	5,473.1	51,225.1	8,988.6	5,690.29	1,010.00	56,965	20,992	13,634.20
Mining, fuel	Number of projects	2	9	1	…	2	9	24	39	26	22	17	37
	Foreign investment	29,500.0	17,150.0	816.9	…	750.0	2,200.0	303,703.8	81,261.04	…	98,771	95,966	1,599,314.11
	Total	29,500.0	27,100.0	825.0	…	750.0	6,352.6	312,109.7	93,538.63	73,806.16	115,271	100,066	2,280,459.09
Hydropower	Number of projects	-	1	…	…	…	…	6	10	13	4	3	4
	Foreign investment	-	447,395.0	…	…	…	…	493,152.6	796,250.00	…	300,432	632,500	174,275.00
	Total	-	688,300.0	…	…	…	…	524,148.7	1 065 250.00	1 776 702.20	360,539	830,000	218,260.00
Garment	Number of projects	8	6	2	2	4	…	3	1	5	8	5	2
	Foreign investment	8,613.0	12,851.0	645.3	400.0	4,020.0	…	3,100.0	300.00	…	5,165	4,290	1,200.00
	Total	9,300.0	13,137.0	864.3	400.0	4,700.0	…	3,100.0	300.00	3,885.00	5,521	5,109	1,200.00
Contruction	Number of projects	-	3	1	…	4	1	8	3	3	...	10	9
	Foreign investment	-	5,775.0	1,905.7	…	11,969.6	996.0	4,155.4	1,550.00	…	...	56,452	24,676.58
	Total	-	6,000.0	847.3	…	13,698.0	996.0	9,991.1	1,550.00	130,600.00	...	70,500	27,194.08

<표계속>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Number of projects	2	1	…	…	1	…	2	-	-	...	1	1
	Foreign investment	44,000.0	62.0	…	…	10,093.2	…	24900.0	-	-	...	15,901	41 049.75
	Total	44,000.0	62.0	…	…	12,940.0	…	27000.0	-	-	...	32,451	83 775.00
Service	Number of projects	3	16	21	20	25	15	23	20	21	40	18	30
	Foreign investment	102.0	8,451.0	7,534.1	8994.5	10,152.6	17,682.7	7259.9	14,320.36	…	154,662	27,196	1,041,347.39
	Total	110.0	12,225.0	9,409.1	11,101.4	11,132.7	22,445.0	8497.1	20,865.48	12,098.65	181,185	36,810	1,055,059.11
Hotel, tourism	Number of projects	6	1	1	4	8	8	8	10	9	43	8	16
	Foreign investment	2,008.0	295.0	362.4	7,679.9	1,847.2	32,088.0	6130.0	13,079.20	…	178,723	26,865	37,454.50
	Total	247,500.0	295.0	337.5	10,739.9	2,050.0	33,388.0	7000.0	13,109.20	32,224.18	183,839	30,130	44,220.00
Bank, insurance	Number of projects	-	1	1	…	…	…	1	-	-	26	4	8
	Foreign investment	-	5,000.0	5,000.0	…	…	…	10000.0	2,500.00	-	96,093	23,600	64,180.00
	Total	-	5,000.0	10,000.0	…	…	…	10000.0	5,000.00	-	134,183	28,200	77,000.00
Trade	Number of projects	10	4	16	6	22	8	19	11	17	15	12	18
	Foreign investment	1,561.0	380.0	5,800.0	2,186.5	8,518.5	2,850.0	16265.0	6,385.00	…	12,948	9,548	15,882.97
	Total	2,063.0	380.0	6,707.2	2,800.0	10,068.0	2,950.0	19000.0	7,855.00	86,049.09	13,928	10,088	16,639.57
Consultancy	Number of projects	2	8	2	5	5	3	4	1	4	11	10	17
	Foreign investment	299.0	-	170.0	809.3	615.0	489.5	1850.3	200.00	…	2,206	3,155	6,662.00
	Total	308.0	709.0	175.0	920.0	723.0	510.0	1900.7	200.00	1,800.00	2,319	3,460	6,892.00
	Number of projects	43	63	68	63	102	74	162	143	171	191	162	208
	Foreign investment	90,386.4	534,240.0	190,334.2	1,017,053.1	109,764.1	83,032.1	980804.9	1,040,683.82	…	971,412	1,179,230	3,448,037.52
	Total	337,626.0	804,909.8	249,088.8	1,343,140.9	132,318.2	147,345.8	1042815.3	1,245,307.12	2,699,690.94	1,136,903	1,440,815	4,312,886.69

자료: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2) 투자 유인 정책

■ 1988년 이후 '외국인투자법(Laotian Investment Law)'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2009년에는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음

○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이 1988년 3월 라오스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Laotian Investment Law)'을 제정을 통해 마련

○ 1994년 3월 '라오스 외국인 투자진흥관리법'을 공포

- 1988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와의 외자유치경쟁, 세제의 모호성, 열악한 인프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가 미미하자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제정

○ '03년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우대조치 관련 법령'발표

- 합자회사 및 단독 외자기업에 적용

- 전 국토를 지형 및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우대정책 시행

○ '09년 7월 '통합투자촉진법' 제정

- 동법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20년까지 최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의 지위를 벗어나겠다는 목표하에 제정됨

・국내 투자법과 외국인직접투자법을 통합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줄임

・농산물 가공 산업, 인재개발, 보건, 사회간접자본 개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은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 및 이윤의 해외송금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무실과 주거용으로 토지소유 가능

・외국인이 부동산 분야 투자 가능

· 특별경제구역 및 산업단지 개발 및 발전

- 라오스 정부는 국내외투자 촉진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09년말 '통합투자촉진법'개정

- 라오스 정부는 지역을 3개 분류로 나누어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지역 Ⅰ: 투자를 수용할 만한 경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산간, 고원지역

· 지역 Ⅱ: 투자를 일정부분 수용할 만한 중간 정도의 경제 인프라가 갖추어진 산간, 고원지역

· 지역 Ⅲ: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산간, 평야, 고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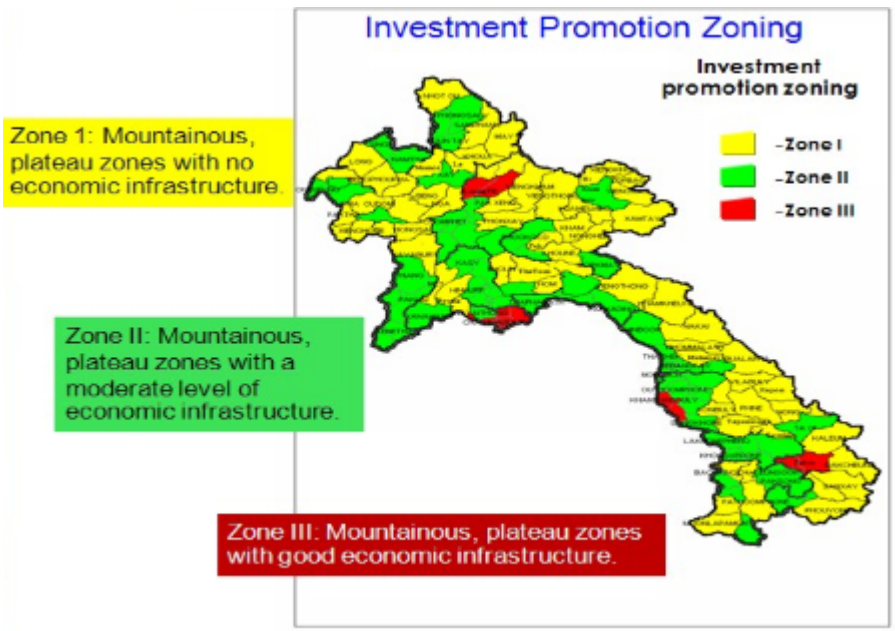

■ 모든 산업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모든 산업분야 및 국토 전반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허용

- 농업관련산업, 광업, 에너지, 목재산업, 소규모 관광업, 경공업, 서비스,

민영화부문 등에 투자유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투자유망분야는

- 수력발전사업, 도로건설 등 운송시설 확충사업 등의 인프라 건설사업
- ADB 주도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유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민관합동 진출
- 자연자원 개발사업
- 경공업 위주의 임가공(쿼터를 목적으로 한 섬유산업, 식품가공 등 가능)
- 목재 가공업, 관광산업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지분 100% 허용
- 외국인 합작투자사업 및 단독 투자사업에 대해 법인세 20% 일률적용
- 투자 사업에 대한 수입관세 1% 적용
-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 수입된 건설장비, 각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감세
-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

○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FIMC: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의 승인을 득한 후 건별로 일정의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아래 중 3개의 조건이 족되는 경우에는 2~5%의 세금을 감면

  · 생산제품의 70%이상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제품의 원자재중 70% 이상을 현지 조달하는 경우
  · 공장의 입지조건이 불리한 경우

- 외자기업에 대해 초기 이익 발생 연도로부터 2~4년 동안 법인세 면제

・투자분야, 자본금 및 수출규모, 기업 활동기간 및 장소에 따라 세금 면제기간 종료 후 2년간 법인세를 50%까지 감면

・기업이 세금 면제기간 중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다음연도 이익에 대한 과세시 전년도 손실을 차감하거나 최대 5년에 걸쳐 손실액을 균등 분할하여 차감할 수 있음

・외국투자자가 이익을 재 투자시 재투자된 이익세에 대하여 면제

- 투자 지역 및 산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공업, 농업, 서비스에 대한 투자시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표 3-10] 외국인투자시 법인소득세 면제 현황

정부가 촉진하는 사업	구역	수준	법인소득세 면제기간 (년)
공공농업서비스업	1	1	10
		2	6
		3	4
	2	1	6
		2	4
		3	2
	3	1	4
		2	2
		3	1

자료: 라오스 통합투자촉진법 제51조.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주) 수준 1: Activities with top level of promotion, 수준 2: Activities with medium level of promotion, 수준 3: Activities with low level of promotion

■ 일부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사항이 있음

○ 외환통제

- 외국 투자기업은 FIMC의 투자허가 전에 라오스내 외자은행이나 라오스 은행에서 킵(Kip)화나 외환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모든 지불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는 라오스 통화당국의 규제에 따라 라오스내의 외자은행이나 라오스 은행을 통해 본국이나 제3국에 송금 가능

○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 및 현지인 고용의무

-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합작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등록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현지인 고용의무

・현지인 의무 채용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인을 우선 고용해야 하며, 국내외 직업훈련을 통하여 종업원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고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도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외국인 고용이 가능

5) 라오스의 대외무역 현황

■ 현재 라오스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97년 가입신청을 했으나 정식 가입은 아직 안된 상태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출의 약 70%,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도로, 통신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세관절차,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등은 제조업 발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년 라오스의 총 무역규모는 33억 달러로 GDP의 약 51%, ASEAN 10국 중 최하위

○ 수출은 15억 5,500만 달러, 수입은 17억 5,000만 달러로 ’09년 대비 수출 54.2%, 수입 23.8% 증가

○ ’10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억 달러로 ’09년 4억 820만 달러 대비 약 51% 감소(2000년 이후 무역수지는 대부분 매년 적자를 기록)

- 대외무역은 원자재가격이 상승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와 금 등 광물자원의 수출 호조

- 채소, 나무제품, 금속(1차)은 2000년 이후 대부분 매년 흑자를 기록

○ ’10년 라오스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광물, 비철금속, 봉재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제품 및 광물, 기계류, 비철금속 등

- 수출 품목별 비중은 원유 및 광물 29.6%, 비철금속 26.7%, 직물 및 의류 14.4%, 신발·모자·우산 12.5% 순. EU의 일반특혜관세(GSP: Gen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품목인 섬유제품의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수입 품목별 비중은 석유제품 및 광물 23.1%, 기계류 21.8%, 비철금속 13.1%, 교통수단 12.6% 순

[표 3-11] 수출입 현황(HS 2-dgit)

(단위: 천달러)

Description	Import					Export				
	2001	2005	2007	2008	2009	2001	2005	2007	2008	2009
Animals and animal products	4,283	6,870	9,577	21,198	…	2,674	2,381	162	2,082	1249
Vegetable products	10,593	14,479	17,014	48,586	…	19,774	18,912	49,500	57,764	37,501
Animals fat and Vegetable oil	807	1,805	2,285	4,618	…	5	_	10	5	0
Processed food, Beverage and tobacco	19,219	26,004	31,195	200,252	…	786	1,365	3,192	3,918	23,315
Oil and minerals products	76,852	180,822	256,878	416,593	…	113,218	21,070	16,488	204,823	366,316
Chemical products or industry related	18,337	325,944	37,438	88,236	…	142	5,361	876	1,101	18,092
Plastic and rubber products	12,396	26,498	29,115	50,708	…	36	47,311	789	182	1,315
Skins and furs and their products	203	268	202	1,233	…	1,185	85	426	421	196
Wood and Wood products	588	849	977	1,801	…	79,219	61,221	45,062	44,419	29,625
Pulp of wood and paper	5,506	7,948	8,692	14,717	…	505	305	541	413	870
Textiles and Apparel	13,165	19,335	10,510	19,411	…	1,810	1,034	1,133	1,410	178,417
Shoes, hats, umbrellas, ect.	1,215	1,671	1,508	2,826	…	1		-	3	154,074
Stone, ceramic and glass products	8,484	10,651	13,936	25,677	…	65	32	75	49	38
Jewellery and precious metal products	2,987	2,466	12,792	23,052	…	518	40,277	91,135	76,335	73,283
Base metals and their products	24,432	83,114	79,638	236,426	…	350	89,913	214,152	432,868	330,790
Electrical and mechanical machines	64,613	226,846	213,391	393,830	…	595	1,951	1,,209	20	14,684
Transport equipment	54,469	87,190	103,987	227,330	…	84	16	360	53	4,011
Optical,photographic,ce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er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clocks and watches; musical instruments, parts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and parts thereof	4,728	8,434	5,762	14,190	…	144	5	126	1	1,934
Weapons and ammunition and parts thereof	52	1	326	13	…	86	_	-	-	0
Miscellaneous articles	2,556	5,800	3,975	12,499	…	773	353	918	1,,806	1,443
Art, Antique	7		13	33	…	14	_	4	3	2
Other	10,014	1,800	893		…	929	775	94	38	0
Total	**335,506**	**1,038,796**	**840,105**	**1,803,228**	…	**222,911**	**292,368**	**426,250**	**827,713**	**1,237,158**

자료: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2011 8월 15일 접근)

[표 3-12] 라오스의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산업			수출(라오스→중국)					수입(중국→라오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음식료품	원료용	산업용	1,238	4,249	4,258	5,870	12,202	90	-	-	-	373
		가정용	-	-	937	2,340	1,448	470	287	373	1,394	1,486
		합계	1,238	4,249	5,195	8,210	13,650	560	287	373	1,394	1,859
	가공용	산업용	-	-	-	-	-	-	-	-	-	-
		가정용	-	8	89	310	448	-	384	-	277	671
		합계	-	8	89	310	448	-	384	-	277	671
	합계		1,238	4,257	5,284	8,520	14,098	560	671	373	1,671	2,530
산업제품	원료용		13,960	32,418	47,582	70,919	293,194	572	660	627	651	1,878
	가공용		8,855	11,345	30,053	48,978	53,167	17,708	19,139	28,308	70,263	69,930
	합계		22,815	43,763	77,635	119,897	346,361	18,280	19,799	28,935	70,914	71,808
연료 등	원료용		17	231	324	843	1,660	-	-	-	-	-
	가공용		-	-	-	-	-	-	-	-	-	-
	합계		17	231	324	843	1,660	-	-	-	-	-
자본재/부품	자본재		-	-	-	-	-	42,597	44,614	52,546	81,852	146,870
	부(분)품		-	-	-	-	-	7,489	8,829	13,494	37,258	24,340
	합계		-	-	-	-	-	50,086	53,443	66,040	119,110	171,210
운송장비	승용		-	-	-	-	-	953	196	949	3,736	6,556
	부(분)품		-	-	-	-	-	9,041	23,717	15,763	17,706	11,154
	합계		-	-	-	-	-	9,994	23,913	16,712	21,442	17,710
소비재	내구재		588	892	1,023	1,036	558	972	2,975	3,259	2,288	5,471
	준내구재		52	62	64	1,863	229	5,525	7,270	2,461	1,684	31,220
	비내구재		12	72	-	533	-	3,765	5,085	2,860	1,231	8,029
	합계		652	1,026	1,087	3,432	787	10,262	15,330	8,580	5,203	44,720
기타			532	-	1,281	982	3,956	356	1,520	14,679	1,667	6,634
합계			25,254	49,277	85,611	133,674	366,862	89,538	114,676	135,319	220,007	314,612

자료: UNTCAD PC-TAS CD-ROM에 기초하여 산출됨.

주) 품목분류는 Broad Economic Categories에 의함.

[표 3-13] 라오스의 대 한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

산업			수출(라오스→한국)					수입(한국→라오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음식료품	원료용	산업용	-	-	-	-	-	-	-	-	-	-
		가정용	-	-	-	752	-	-	-	-	-	-
		합계	-	-	-	752	-	-	-	-	-	-
	가공용	산업용	-	-	-	-	-	-	-	-	-	-
		가정용	-	-	-	-	-	-	-	-	-	-
		합계	-	-	-	-	-	-	-	-	-	-
	합계		-	-	-	752	-	-	-	-	-	-
산업제품	원료용		18	-	111	20,268	15,112	-	4	10	76	155
	가공용		55	14,755	68,843	31,115	1,589	2,396	673	4,601	5,192	2,176
	합계		73	14,755	68,954	51,383	16,701	2,396	677	4,611	5,268	2,331
연료 등	원료용		-	-	-	-	-	-	-	-	-	-
	가공용		-	-	-	-	-	-	-	-	-	-
	합계		-	-	-	-	-	-	-	-	-	-
자본재/부품	자본재		-	-	-	-	-	685	1,806	3,614	1,669	2,354
	부(분)품		-	-	-	-	-	75	13	9	254	1,368
	합계		-	-	-	-	-	760	1,819	3,623	1,923	3,722
운송장비	승용		-	-	-	-	-	1,867	5,325	11,320	15,096	20,552
	부(분)품		-	-	-	-	-	1,218	2,553	4,894	5,074	5,444
	합계		-	-	-	-	-	3,085	7,878	16,214	20,170	25,996
소비재	내구재		-	-	-	-	-	-	-	-	-	892
	준내구재		115	34	138	213	101	-	-	2,627	-	-
	비내구재		1,818	2,789	1,056	301	-	467	558	767	2,052	591
	합계		1,933	2,823	1,194	514	101	467	558	3,394	2,052	1,483
기타			-	-	-	-	216	159	115	2,012	27	75
합계			1,933	2,823	1,194	1,266	317	4,471	10,370	25,243	24,172	31,276

자료: UNTCAD PC-TAS CD-ROM에 기초하여 산출됨.

주) 품목분류는 Broad Economic Categories에 의함.

[표 3-14] 라오스의 대 태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

산업			수출(라오스→태국)					수입(태국→라오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음식료품	원료용	산업용	7,054	3,905	2,143	4,389	7,830	1,334	1,707	3,103	5,483	8,512
		가정용	2,807	2,977	2,005	7,986	6,695	11,774	13,480	13,150	10,769	12,532
		합계	9,861	6,882	4,148	12,375	14,525	13,108	15,187	16,253	16,252	21,044
	가공용	산업용	-	-	-	-	1,461	11,105	10,795	14,258	19,067	18,556
		가정용	225	256	508	1,230	1,021	71,279	85,170	104,505	147,105	166,842
		합계	225	256	508	1,230	2,482	82,384	95,965	118,763	166,172	185,398
	합계		10,086	7,138	4,656	13,605	17,007	95,492	111,152	135,016	182,424	206,442
산업제품	원료용		11,461	17,345	12,751	22,173	26,750	6,262	8,402	13,071	20,733	15,497
	가공용		125,162	292,386	342,172	414,722	286,506	204,854	262,571	316,168	463,331	401,722
	합계		136,623	309,731	354,923	436,895	313,256	211,116	270,973	329,239	484,064	417,219
연료 등	원료용		3,970	4,086	6,607	8,224	9,859	-	-	56	66	-
	가공용		-	-	-	-	-	-	-	-	-	-
	합계		3,970	4,086	6,607	8,224	9,859	-	-	56	66	-
자본재/부품	자본재		1,953	4,020	8,105	14,251	11,939	59,421	80,416	125,797	184,754	190,372
	부(분)품		149	500	876	661	359	10,776	16,712	26,370	28,913	32,527
	합계		2,102	4,520	8,981	14,912	12,298	70,197	97,128	152,167	213,667	222,899
운송장비	승용		-	118	327	6,481	3,855	35,692	58,970	93,056	113,506	112,619
	부(분)품		288	98	5,272	9,482	5,311	28,265	37,525	46,189	61,426	67,166
	합계		288	216	5,599	15,963	9,166	63,957	96,495	139,245	174,932	179,785
소비재	내구재		194	242	310	391	202	37,294	41,981	44,374	38,503	34,907
	준내구재		1,068	1,512	2,526	2,813	2,585	13,593	13,056	14,714	15,135	15,760
	비내구재		192	1,347	1,735	1,784	2,232	28,936	32,214	45,809	57,024	65,312
	합계		1,454	3,101	4,571	4,988	5,019	79,823	87,251	104,897	110,662	115,979
기타			685	11,544	3,484	601	123	190,550	280,931	343,018	450,731	359,767
합계			155,208	340,336	388,821	495,188	366,728	711,135	943,930	1,203,638	1,616,546	1,502,091

자료: UNTCAD PC-TAS CD-ROM에 기초하여 산출됨.

주) 품목분류는 Broad Economic Categories에 의함.

6) 한국-라오스 경제협력 현황

(1) 한·라오스 경제협력 관계

■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1995년 10월 25일 외교관계 재 수교

○ 1996년 9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개설 및 '01년 1월 주한 라오스대사관 개설

○ 한국 정부는 ASEAN과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등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와 외교관계 재수립

-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6월 22일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1975년 7월 25일 라오스의 공산정권수립과 동시에 단교
- 북한은 1974년 6월 24일 라오스와 수교함

■ 한국과 라오스는 외교관계 재수립 이후 경제협력에 필요한 각종 협정을 체결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6), 투자보장협정(1996),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06) 등을 체결

○ '08년 10월 1일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 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2%), 신발(13%) 등 10,658개 품목 관세 철폐
-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 품목은 특혜관세 혜택대상에서 제외

(2) 양국간 교역 규모

■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

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교역 규모는 '10년에 1억 3,200만 달러로 '09년 대비 74.8% 증가

- '09년에는 대 라오스 수입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7,329만 달러에 그쳤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및 부품, 전기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동광, 목재류, 동제품, 의류 등임

- '06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이후 양국간 교역 급증

■ '10년 중 라오스의 총 대외교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09년에 비해 0.7%p 증가

○ 라오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제품의 비중은 '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년에는 7.2%에 이름

○ 라오스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07년 최고인 6.6% 이후 감소하여 '10년에는 1.1%로 감소

(3) 대 라오스 투자 현황

■ 2001년-2009년 간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누적 투자는 4억 4천 5백만 달러, 프로젝트 수는 총 142건

○ 라오스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신흥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08년까지 우리나라 대라오스 투자는 확대,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투자는 '08년 이후 감소

- '10년 대라오스 투자는 1,790만 달러로 '09년 대비 42.8% 감소

·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FDI 비중은 '08년 3.6%에서 '09년 0.7%로 감소

· 우리나라가 라오스의 총 FDI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 감소는 우리기업의 투자 감소 뿐만 아니라, 베트남·중국·태국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

■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주요 투자부문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순

○ '10년 12월말 현재 산업별 누적 투자액은 건설업 6,376만 달러(40%), 도매 및 소매업 3,998만 달러(25.1%), 금융 및 보험업 2,291만 달러(1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70만 달러(6.7), 그리고 농업부문은 509만 달러(3.2%)

· 우리나라 최대 투자부문인 건설업에는 갑을건설, 동부ENG, 동신기술개발, 선진엔지니어, 토펙ENG, 이정씨앤디, 간삼건축종합 등이 진출

(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돕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12위 EDCF 지원 국가로 '10년말 승인된 누계 기준 총 8건, 1,622억 원을 지원

- 주요 지원 사업은 송전사업, 도로 개선사업, 교육 및 의료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등

- 우리나라가 라오스에 지원하고 있는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가 됨

· GMS 북부 송전사업은 입찰서류 준비 중이며, 북부도로개선사업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은 시공 중에 있음

[표 3-15] 대 라오스 EDCF 지원현황('10년말 기준)

사업명	승인금액(백만원)	비고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	3,001	완료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	23,133	
5개 공항 소방설비 공급(소액차관)	3,539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소액차관)	3,539	
109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소액차관)	3,539	
북부도로개선	28,395	시공중
메콩강변 종합관리	52,247	
GMS 북부 송전	44,783	입찰서류준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Ⅳ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

1. WTA를 활용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2. 라오스내 거점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Ⅳ.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

■ 대전시는 라오스와의 협력을 과학기술 협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라오스 경제발전으로의 진출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이를 위한 3가지 협력 체제를 제시함.

1. WTA를 활용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선, 대전시의 핵심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대전시의 대 라오스 ODA 협력, 특히 과학기술 협력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지원과 대 라오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대전 소재 대학·연구소・기업(대전소재 기업 및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 간 관·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대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에 라오스를 참여시켜 대전시-라오스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림 4-1] 대외원조의 구조 및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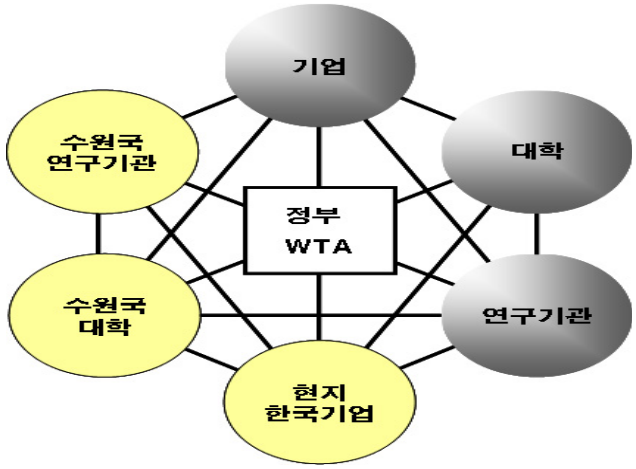

2. 라오스 내 거점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관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울러 대전시의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정책과 정부의 과학기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대전 소재 대학 및 정부산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국제협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관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대전시와 라오스 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및 관련 경험을 효과적으로 라오스에 전수하고 라오스의 자원개발 투자 등을 통해 라오스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데 관심 있는 민간 기업에 과학기술협력 및 시장개발을 위한 대전 소재 대학 및 연구소와 라오스 정부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가 ODA 사업을 통해 대전 소재 대학, 대덕특구 내 연구소와 협력하여 라오스 내 대학에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라오스에 지원하는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과학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짐.

[그림 4-2] 라오스내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과학기술 협력지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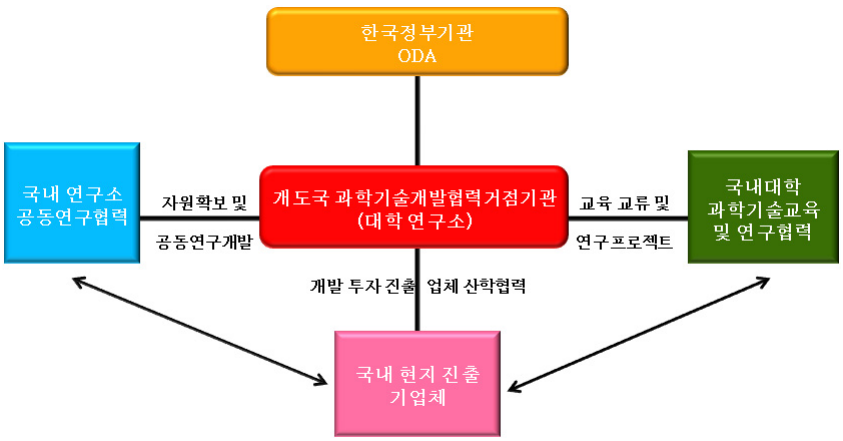

○ 협력사업시 직면하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전-라오스 간 과학기술협력 거점 연구소(또는 기관)는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송대학교와 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수파노봉대학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3.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 대전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출 국내기업 및 대전 소재 대학과 대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라오스 출신 유학생에 대한 기업 및 대학의 장학금 지원 및 인턴쉽 기회 제공,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에게 현지 출신의 우수 인재 풀 제공, 대전 소재 대학 및 대덕 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원의 국제협력사업, 라오스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등 관·산·학·연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라오스 현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대학/연구소와 라오스 현지 대학/연구소 및 현지 진출 국내 기업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은 대전시 중심의 과학기술 교육연구협력 지원 및 전문가 풀 운영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같음.

[그림 4-3]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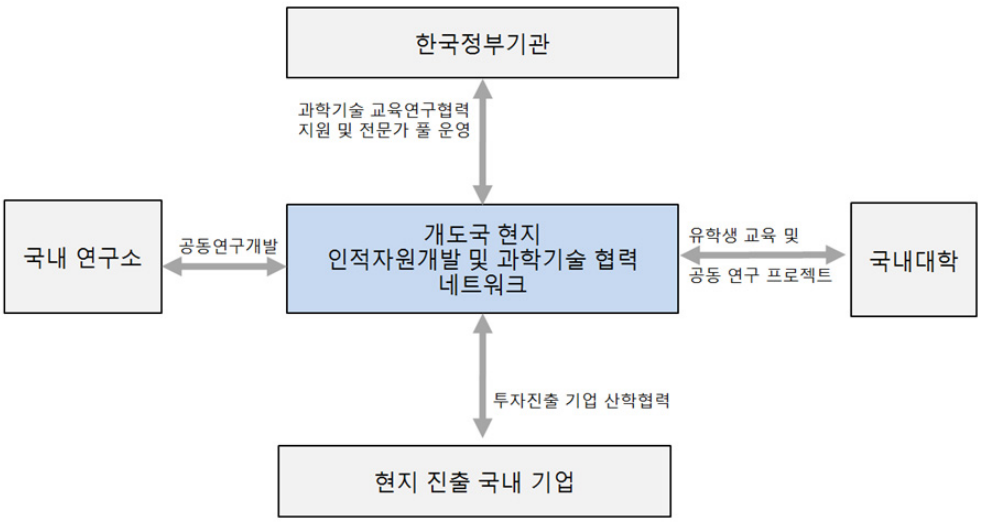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

Ⅴ. 요약 및 결론

■ 라오스는 동남아 내륙국가로서 1997년 ASEAN에 가입하면서 점차 개방적이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음. 라오스의 시장규모는 아직 영세한 수준이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라오스 산업과 시장현황에 관심이 필요함. 또한 라오스는 '07년 대전시와 루앙프라방주간의 우호협력협정 체결 이후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라오스 경제 현황분석을 통해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대전시와 라오스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대전시와 라오스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방안을 도출 및 파악하는 기초가 되는 라오스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였음. 제Ⅳ장에서는 제Ⅳ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대전시와 라오스 간 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협력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기술하였음.

■ 제Ⅳ장의 분석결과, 라오스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개발 및 산업구조개혁 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WTA를 활용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전시의 핵심

역량이 되는 과학기술기술(R&D)과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라오스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대전시의 대 라오스 ODA 협력, 특히 과학기술 협력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지원과 대 라오스 진출 기업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대전 소재 대학·연구소・기업(대전소재 기업 및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 간 관·산·학·연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이의 일환으로 대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라오스 내 거점연구소 설립을 통한 산・학・연・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전시의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협력정책과 정부의 과학기술 ODA사업(KOICA/EDCF지원)과 대전 소재 대학 및 정부산하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국제협력사업, 민간 산업체의 개도국 개발 투자관심 등을 라오스 ODA 사업에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기존 파트너십(우송대학교-수파노봉대학교)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음.

○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대전시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라오스의 과학기술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고, 라오스 진출 국내기업 및 대전 소재 대학과 대덕 특구 내 연구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라오스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라오스의 사회개발과 자원개발 정책에 편승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적개발협력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 같음. 이는 라오스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는 과학기술 기반의 공적개발협력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교류의 물고를 트는 전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위한 소규모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참고문헌>

김철희·최영렬·안동원. 2008. 「한·아세한 FTA 체결에 따른 아세안국가의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사업 수요발굴 및 사업확대 방안 마련」. 노동부.

농촌진흥청. 「라오스」. 동향자료. http://rda.go.kr

박복영. 20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07-07.

분턴 깨오월라 이옹. 2005. 「라오스의 무역과 투자현황」.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림청. 2006. 「해외조림투자 환경 및 적지 조사」.

이재호·김인준. 2009.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광물자원 및 투자정책. 자원환경지질, 제42권제3호, pp. 283-288.

이행규・유정훈・반기일. 2010.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라오스 정치·경제 동향」. 신용조사부 국별평가팀, 국별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2010.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보트」. 해외경제연구소, 국별리포트.

ADB. 2009. 'Asian Development Bank & Lao People's Democrati'. Manila.

ADB. 2010. 'Basic Statistics 2010'. Manila.

ADB. 2011. 'Asian Development Bank Outlook 2011'. Manila.

AgriSource Co., Ltd.(Bangkok, Thailand). 2004. Lao Agricultural situation: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for U.S. agricultural products.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GAIN Report, LA4001.

ASEAN. 2010.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20'. Jakarta:

ASEAN Secretariat, October.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Lao PDR (http://www.moc.gov.la)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PDR (http://www.investlaos.gov.la)

Sirikeratikul, S. 2006. Laos HRI food service sector (Vientiane and Luang Prabang Market).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GAIN Report, LA6001.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Classifications Registry

UNTCAD PC-TAS CD-ROM

Yearbook database in Lao Statistics Bureau(http://www.nsc.gov.la)

<부록 > 라오스의 외국인투자법제[1)]

가. 일반적인 법제의 체계

	법령 체계	내 용
1	헌법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최고법
2	국회법	국회에서 채택한 법
3	국회상임위원회 결의 및 지침	국회개회기간이 아닐 경우 국회법에 대한 해석 등을 공포함
4	대통령령 및 시행령	내각에서 채택된 후 대통령이 서명함.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채택한 법을 시행하기 위하 여 공포함
5	정부칙령 및 결의	각 정부부처가 자체적인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포함. 내각에서 채택된 후 총리가 서명함
6	장관 등의 결정문, 명령, 지시 및 통지	장관 또는 행정관의 개별적인 결정문 또는 명령으로 자기 자신의 규제 권한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때 사용함
7	주지사의 결정문, 마을 결의	주지사 또는 마을이장이 특정한 규제 조치를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공포함

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 라오스는 2004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이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1) 이행규외 2인(2010), pp.173-218.

○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7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이하 '통합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하여 2011년 상반기에 함께 시행할 예정임. 이로써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함.

다. 투자관련법령의 기본적 내용

(1)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

○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이 필요함. 외국인투자허가증은 라오스 내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이하 'MPI')에서 발급하여 줌. 한편, 통합투자촉진법은 이에 대한 신청절차를 라오스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절차가 간소해짐. 아울러,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투자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일창구서비스(one-door service) 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17조).

(2) 토지사용권의 취득

○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외국 인투자자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해졌다는 점임. 과거 외국인 투자자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토지임차권만 가능),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화 5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의 승인 하에 일정한 토지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되었음

(제58조). 이로 인하여 라오스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음.

(3) 세금 혜택

○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세금에 관한 차별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통합투자촉진법은 정부가 촉진하고 있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별로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관련법제

가. 라오스 기업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취급

○ 2005년도에 발효된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은 라오스에 설립되어 존속하는 모든 개인기업, 공기업, 합작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범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적으로 설립하거나 내국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합작기업들도 포함됨(제8조).

(1) 투자관련법령의 내용

○기업의 형태

○ 기업법은 라오스 내 기업을 아래와 같이 3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라오스 내국인과 동등하게 라오스의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기업법 제3조).

(가) 개인사업체

(나)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무한책임 파트너쉽과 유한책임 파트너쉽으로 나뉘어짐.

(다) 회사

1) 유한회사

주주가 최소 2명 이상, 30명 이하이어야 하고, 순이익의 5-1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2) 주식회사(Public Company –'공개기업'이라고도 함)

3) 최소 9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기업등록일로부터 감사를 고용하여야 함.

4) 합작회사

5) 국가소유회사

○ 라오스는 기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기업을 설립하여 일정한 사업분야에 참여하고, 라오스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정보,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려 및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기업법 제6조).

(2) 투자형태 및 투자절차

(가) 통합투자촉진법의 개요

○ 2009년 제정되어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통합투자촉진법은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령임. 통합투자촉진법은 라오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도 투자보호, 투자자의 권익보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투자신청절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1조).

(나) 투자형태

○ 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라오스 내의 모든 투자자들은 아래 3 가지의 방법으로 라오스 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1) 합작투자 : 라오스법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으로서 라오스 현지 투

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함.

2) 외국인단독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하는 방법임.

3) 합작사업계약 :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라오스 현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상공부와 기획투자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합작계약서는 법무부 공증부서에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함.

○ 라오스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주로 합작투자기업 또는 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를 활용함. 다만, 상당수의 사업분야(광산업 및 전력사업 등)에서는 외국인단독투자가 금지되어 있는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는 라오스정부 또는 내국인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하여야 함.

○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의 내국인 투자자 또는 공공기관과 합작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임. 단, 외국인투자자가 최소 10%의 총 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함. 이 경우 등록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총 자본금(Total Capital)의 30% 이하일 수 없음[총 자본금 = 등록자본금 + 장기부채(Long Term Debt) + 기타자산(Other Equity),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및 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In Capital)].

○ 합작사업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라오스에서 사업활동이 가능함. 다만, 합작사업계약을 통한 투자방법은 면세 및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허권이 필요한 사업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형태는 아님(드물게 사용되고 있음).

(다) 투자절차

○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로 절차가 구분됨.

1) 투자범위와 투자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라오스의 사업환경, 사업파트너 및 경쟁자, 경제적 타당성, 비용, 법적 환경, 그리고 사회기반구조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직접투자가 과연 바람직한지 결정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간접투자를 통해서도 투자자의 목적 성취가 가능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단,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또는 합작사업계약, 수출입계약 및 기존에 있는 사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2) 외국인투자허가증(Foreign Investment License)의 신청

○ 외국인투자자가 라오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 외국인투자허가증 신청서(별첨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허가증이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15-45일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소요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는 외국인투자허가증 신청서가 기획투자부에 제출되고 심사를 받는 시점에서 관련 부서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

○ 외국인투자허가증이 발급되면 재무부관할에 있는 국가자산관리부(State Assets Management Department)에 주요서류들을 등록하여야 함. 이에 이어서 상공부의 기업등록부서에 기업명을 등록함.

○ 한편,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허가증 신청절차를 라오스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절차가 완화됨. 아울러,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단일창구서비스(One-Door-Service)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17조).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허가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발급일
- 상호
- 외국인 투자자의 대표자
- 투자형태
- 업종
- 총 자본금 및 등록자본금
- 투자기간
- 적용되는 법인세율

3) 법인설립 및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License) 신청

○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로부터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함. 기업등록증은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 개시를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해당 기업이 라오스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함.

○ 기업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1. 발급일
2. 신청인의 성명, 국적 및 직책
3. 회사의 상호, 주소 및 형태
4. 등록자본금
5. 회사의 영업
6. 만료일

4) 세무등록증(Domestic Tax License)의 신청

○ 다음 단계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부터 세무등록증(Domestic Tax License)을 발급받아야 하며, 세무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됨.

- 발급일
- 신청인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및 직책
- 회사의 상호, 주소 및 형태
- 회사의 영업
- 등록자본금
- 예상수입
- 만료일
- 과세번호

○ 모든 세무등록증은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조사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항상 1년 단위로 발급·갱신됨.

5) 운영면허(Operating License)

○ 허가증 및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라오스중앙은행(The Bank of Lao P.D.R.) – 외자유치증서(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 회사인감(Company Seal)
- 정보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 회사인감 승인

6) 기타 인허가 취득

○ 기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허가가 있음.

- 공장운영허가증(상공부)
- 수출입 허가서(상공부)
- 탐사, 답사, 채굴, 광물처리 허가증(에너지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

-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고용인을 위한 사업비자 및 취업허가서(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7) 투자 사업분야에 따른 절차의 구분

○ 한편, 통합투자촉진법은 사업분야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절차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차별화하고 있음. 즉, 통합투자촉진법은 사업분야를 (ⅰ) 일반투자, (ⅱ)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 (ⅲ)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로 각 나누어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음.

(i) 일반 투자

○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투자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획투자부(MPI)를 통해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일반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을 예정임.

○ 일반투자는 기획투자부가 지정한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투자 형태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됨. 즉, 외국인 투자자도 외국인투자허가증 없이 기업법에 따라 기업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되고, 기업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상공부의 단일창구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 자본액수가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킵(KIP) 이상이 되어야 함(통합투자촉진법 제17조). 사업분야는 http://www.investlaos.gov.la 및 관련법에서 참조 가능.

○ 한편, 상공부의 기업등록 심사결과는 투자가 투자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한, 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함. 반면, 투자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분야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함(통합투자촉진법 제18조). 기존에 이미 기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

태에서 사업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기업등록증 변경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규 등록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됨. 사업제한분야 역시 http://www.investlaos.gov.la 및 관련법에서 참조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기간과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에서 일반 사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을 향후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20조).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의 성격, 규모 및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50년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이를 결정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외국인투자기간은 7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15년간 투자기간을 갱신해 왔음. 그러나 통합투자촉진법은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통합투자촉진법 제20조),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통합투자촉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ii)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

○ 정부가 양허권을 부여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양허권은 주로 토지, 광물, 전력, 항공, 통신, 보험, 금융업 개발과 관련하여 부여됨.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및 내국인 투자자의 경우, 기획투자부의 단일창구서비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행정조직의 심사를 받게 됨(통합투자촉진법, 제 21조).

(iii)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

○ 일반 사업분야 또는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 중 라오스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요역할을 하게 될 사업분야의 경우,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또는 사업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는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승인 등 필요한 승인절차를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두 거친 뒤 자금투입만이 필요한 상태를 뜻함(통합투자촉진법 제29조).

○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됨(제30조).

- 종합개발계획안
-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 조사 보고서
- 투자조건
- 자금출처

○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제31조).

- 기획투자부에서 검토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조직(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에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함.
-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조직이 승인을 하였을 경우,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산업부문, 기획투자부, 상공부 및 대사관 등에 통보를 함.
- 양허권이 부여되는 사업분야 중 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분야의 경우,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까지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서 수취일로부터 45영업일을 초과할수 없 음.
-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요건과 역량을 검토해본 후 상공부 혹은 기획투자부에서 투자에 대한 승인 허가를함(제32조).

(3) 투자인센티브

○ 법인소득세 등의 세금 혜택은 투자촉진분야(산업분야)와 투자촉진구역에 따라 나누어져 부여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가) 투자촉진분야

○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산업분야는 농업, 공업 및 서비스업분야로 분류됨(제 49조). 중앙정부는 라오스의 빈곤퇴치, 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직업창출 및 생활수준향상과 관련한 중요도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상세목록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분류함(제49조).

1단계 -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2단계 - 중간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3단계 - 낮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나) 투자촉진구역

○ 라오스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국토를 세종류의 구역으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제50조). 투자촉진구역의 정확한 위치는 별도의 규정에서 다룰 예정임(통합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측됨).

제1구역 - 고립된 산악 고원 지대이며 투자를 촉진하기에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구조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게 되는 구역.

제2구역 - 산악 고원 지대이며 투자를 부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구조가 갖추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간수준의 투자촉진을 받게 되는 구역.

제3구역 - 투자를 촉진하기에 탁월한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구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게 되는 구역.

○ 예를 들어서 라오스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및 팍세 등은 제 3구역에 해당되며, 접촉이 어렵고 경제개발이 시급한 농촌지역의 경우 제 1구역에 해당됨.

(다) 법인소득세 면제 정책(통합투자촉진법 제51조)

정부가 촉진하는 사업	구역	수준	법인소득세 면제기간 (년)
공공농업서비스업	1	1	10
		2	6
		3	4
	2	1	6
		2	4
		3	2
	3	1	4
		2	2
		3	1

자료: 통합투자촉진법 제51조.

주) 수준 1: Activities with top level of promotion, 수준 2: Activities with medium level of promotion, 수준 3: Activities with low level of promotion

○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계산됨.

○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이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면세 기간이 계산됨.

○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광산업, 산림업 또는 전력산업 등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산업분야에서의 법인소득세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령 조항들이 적용됨.

○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관세 및 세금혜택이 추가로 주어짐(통합투자촉진법 제52조).

- 사업의 순이익금을 사업확장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소득세를 면제받게 됨.
-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및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됨(단, 연료 수입에 관해선 관세 또는 세금면제 혜택이 허용되지 않음).

수입관세 면제 제도 이행은 재무부에서 담당함(제55조).

- 일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면제됨.
- 사업을 개시한 뒤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세무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는 조건하에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음.

○ 병원, 유치원, 학교, 연구분석센터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상기 도표에 표기된 면세기간에서 추가로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또한 정부에 지불해야 할 토지임대료 또는 양허료(concessions royalty)를 해당 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면제받게 됨(제 54조).

- 제1구역 : 15년
- 제2구역 : 10년
- 제3구역 : 3년

○ 외국인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라오스내의 상업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제53조).

(라) 관세법

1) 정부의 관세정책

○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관세정책을 세움(관세법 제3조).

2) 투자촉진을 위한 관세감면

○ 투자촉진정책상 모든 수입품은 통합투자촉진법에서 명시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됨(관세법 제44조).

3) 관세 및 세금정책에 대한 이행

○ 각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관세 및 세금혜택은 기업등록증 또는 양허권 증명서에 명시되며, 재무부 관할에 있는 세관부와 세무부는 이에 따라 촉진정책을 이행하게 됨(통합투자촉진법 제55조).

(마) 정보의 제공

○라오스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로서 라오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란 수월하지 않음. 법령, 시행령 및 훈령들이 번역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조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내국인의 경우에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

○주제별로 관련 정부기관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고, 정식으로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체로 신속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자료를 번역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음.

○최근 들어 라오스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및 자료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제57조).

(바) 토지사용권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현재 가장 주시하고 있는 조항은 토지사용권 취득여부를 다루고 있는 제58조임.

(사) 촉진정책의 연장

○관련 사업분야 또는 특별경제구역에 추가적인 촉진정책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중앙정부는 국회회의 또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에 언급된 관세 및 세금혜택 정책을 연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59조).

(4) 양허권 제도

○라오스는 토지, 광물, 전력, 항공, 통신, 보험, 금융업 개발 등과 관련하여 양허권제도를 두고 있음. 이하 양허권 부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

(가) 투자자 선정절차

○ 라오스는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의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하고 있음(제22조).

○ 기획투자부는 해당 사업분야를 감독하는 관할기관 및 지방행정조직과 협력하여 신청서 및 입찰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하게 됨. 구체적으로 기획투자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제23조).

- 투자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정부, 투자자 그리고 대중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
- 토지사용권이 정부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관할 토지관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보상함.
- 투자자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함. 투자자는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하고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운송수단, 장비 및 원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관세 면제를 요청함.
- 기획투자부와 해당 사업분야의 관할기관은 투자자와 협의를 하여 제안서 초안을 작성함. 합의된 제안서는 정부에 제출되고, 투자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지정되는 사업보증금을 국고계좌에 입금함. 사업보증금은 사업이 개시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자에게 반환됨.
-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기획투자부에서 양허권을 발급하게 됨.

(나) 양허권 발급절차(제24조)

○ 기획 투자부는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행정조직의 승인 하에 양허권을 발급할 수 있음.

(다) 양허권증명서(제25조)

○ 양허권증명서는 투자자가 양허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임.

○ 양허권증명서는 기업등록증, 투자허가증, 특별경제구역의 촉진정책, 세무등록증 및 사업허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명서 취득과 동시에 사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음.

○ 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활동을 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획투자부에서 경고통지서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게 되고, 경고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명서가 최소됨과 동시에 투자보증금이 몰수됨.

(라) 양허계약 (제26조)

○ 양허계약은 투자자와 정부가 자발적으로 상호 합의하에 작성됨.

○ 양허계약은 일반적으로 양허권의 목적, 조건, 그리고 투자자와 정부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정의함.

○ 양허계약 작성이 완료되면 그 유효성을 확인 받기 위해 라오스 법무부 공증부서에서 인증을 받음.

○ 양허계약 내용의 수정은 투자자와 정부의 상호 합의 하에만 가능함(제27조).

○ 일반적으로 기획투자부가 해당 사업분야의 관할기관에 통지를 하게 됨.

○ 양허계약 내용의 수정으로 인하여 권리 및 지분 이전이 생길 경우에는, 조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조건 하에 수정이 가능함.

(마) 양허권 취득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의 투자기간(제28조)

○ 투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차적으로 9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라오스 국가에 최고수준의 이익을 가져오고 양허계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현지 개발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토지사용권제도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라오스정부는 토지사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

○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되었으나, 통합투자촉진법의 제58조에 의하면 등록자본금이 미화 오십만(USD 500,000) 달러 이상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부(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및 면적 내에서만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기간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택 및 건물을 건설하려면 지방행정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별경제구역 및 관련규정

○ 특별경제구역은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구역만을 위한 특별 법령제정을 통해 규제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관세 및 세금혜택과 관련하여 라오스의 관세법 및 조세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구역을 다루게 되는 특별규정에 따라 혜택이 정해짐(통합투자촉진법 제52조).

○ 특별경제구역이란 특별 촉진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구역을 뜻하며 이러한 구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각 구역을 개별적으로 다루게 되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게 됨.

○특별경제구역은 여러 구역들로 구성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산업구역, 수출을 위한 생산구역, 관광구역, 면세구역, 기술 및 정보개발 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

○중앙정부는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단기 및 장기계획을 세우고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투자승인을 담당하게 됨.

(가)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제34조)

① 특별경제구역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② 정부, 개발자 및 국민들의 이익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③ 특별경제구역이 개발되는 목적에 적절한 지역이어야 함.

④ 면적과 경계선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함.

⑤ 각 구역에 적용되는 경제촉진정책을 구축하여야 함.

⑥ 각 구역마다 자치적으로 사용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⑦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행정조직의 감독을 받아야 함.

⑧ 구역관리청이 양허계약기간에 한에서 토지를 제 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함.

⑨ 구역관리청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⑩ 구역 내에서의 보안, 평화, 안전 및 환경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나) 특별경제구역 개발절차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개발자의 경우 기획투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허권 취득에 대한 신청서와 동일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됨.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최종결정은 중앙정부가 내리게 됨.

○중앙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및 기획투자부가 제출하

는 제안서를 기초로 해당 구역의 잠재력을 고려하고 해당 사업분야의 관할기관 및 지방행정조직과 협력하여 결정을 내리게 됨.

○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운영 및 촉진정책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관련 규정을 발효함.

(다)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

○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는 기획투자부의 제안에 의거하여 만들어짐(제36조).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에는 개발자, 해당 산업부문의 대표단, 지방행정조직 및 해당 구역의 라오스국가건설전선으로 구성됨.

(라)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제37조).

-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관하여 연구를 착수하고 관련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함.
- 특별경제구역을 일정한 기간 내에 개발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개발업무를 착수함.
-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협력하여 특별경제구역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대처함.
- 구역 개발자의 예산에 의거하여 업무를 이행함.
- 정부가 관련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 후에야 해당 특별경제구역 개발위원회가 해산됨.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은 주로 (ⅰ) 구역관리청(Zone Authority), (ⅱ) 구역내에서의 활동, (ⅲ) 구역 내에서의 관리의 원칙, (ⅳ) 구역의 거시경제관리, (ⅴ) 촉진정책의 공식화에 대한 원칙, (ⅵ) 정부와 개발자간의 이익공유의 내용을 담고 있음.

(마)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투자촉진정책에 대한 공식화 업무

○ 특별경제구역관리청은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으로 중앙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에 관련된 촉진정

책 및 기타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및 공식화 업무를 담당하게 됨(제39조).

(바) 특별경제구역의 운영에 대한 원칙

○특별경제구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제40조).

- 경제관리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자치적으로 운영함.
- 중앙정부의 거시경제관리 또는 중앙정부가 지명한 지방행정조직의 거시경제관리에 따라 운영함.

(사) 특별경제구역 개발

○특별경제구역 개발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목적에 따라 투자유치에 필요한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제41조).

(아)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개발활동에 대한 투자기간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개발활동에 대한 투자기간은 각 구역의 종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정해짐. 기간이 일차적으로 9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승인 하에 연장이 가능함(제42조). 양허권 연장과 동일하게, 라오스 국가에 최고수준의 이익을 가져오고 계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현지 개발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자)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기타 투자자들의 투자신청서

○개발자를 제외한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려는 기타 투자자들의 경우, 관련 특별경제구역관리청의 단일창구서비스부서에 투자신청서를 제출함(제43조).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하게 되는 기타투자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7) 외국인투자자의 의무 및 권리

(가)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라오스의 통합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의무는 (ⅰ) 일반의무와 (ii) 환경보호의무로 구분됨.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1) 투자자의 일반의무(제69조)

가) 라오스의 기업회계법에 따라 회계관리를 유지할 의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라오스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른 회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나) 해당 관세, 세금 및 서비스 비용을 적시에 완납할 의무.

다)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내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의무; 라오스 노동력의 고용촉진 의무; 라오스 근로자의 노동력개발과 전문기술을 강화하고 기술을 이전할 의무.

라) 회사의 노동조합에 집단조직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

마) 사업 활동에 관하여 현지 행정조직과 협조할 의무; 사업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할 의무;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국민의 빈곤퇴치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헌 의무; 바)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기타 의무를 이행할 의무.

2) 투자자의 환경보호 의무(제70조)

○투자자는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운영이 공중, 안보 및 사회질서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시에 당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나)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투자자는 (ⅰ) 투자에 있어 단독으로 행위 할 권리, (ii) 사업 활동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 (iii) 근로자 고용 권리, (iv) 라오스에 거주할 권리, (v)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수익의 본국 송금 권리를 가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1) 투자에 있어 단독으로 행위 할 권리(제64조)

- 라오스 법에 의하여 제한 받고 있지 않은 모든 부문 및 투자구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법인의 범위, 형식 및 유형에 따라 투자할 권리
- 해당 사업의 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정부 또는 지역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양허권을 신청할 권리
- 정부에 특별경제구역 및 특정경제구역 설립을 위한 양허권을 신청할 권리
- 라오스 내에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 국가 정책 또는 법령상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투자목적 또는 투자활동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투자로 인하여 얻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 투자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
- 임대권, 양허권 및 사용권에 부여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자본금 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울러 토지임대계약 또는 토지사용권매매계약 기간에 따른 토지임대계약 상속에 대한 권리 등
- 토지를 임대한 자 또는 토지 양허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기간 또는 양허권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할 자격을 가지며,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고 특히, 라오스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서 킵(Kip) 또는 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리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투자 활동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제65조)

-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
- 해당 투자와 관련한 자재, 장비, 운송수단, 기계 및 기술을 조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국내 및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력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투자에 대한 토론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법인의 자본을 양도, 이전, 회수 및 증자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운영 이행에 관한 권리를 임시로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기관에 해당 법인의 영업중지, 해제 또는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법령에 명시된 기타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자 고용 권리(제66조)

- 기술인 및 전문가와의 고용계약 체결; 노동법에서 명시한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해외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직무를 순환할 수 있는 권리
-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외국인투자자의 거주할 권리(제67조)

- 외국인투자자 및 그의 가족은 투자기간 동안 라오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외국인 기술자 및 전문가는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라오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외국인투자자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 및 전문가는 라오스 출입국을 위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1)회 오(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방문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5) 외국인투자자의 자본, 자산 및 수익의 본국 송금 권리(제68조)

- 외국인투자자는 본인의 자본, 자산 및 투자로 얻은 수익 등을 라오스 내에 위치한 상업은행 및 관련 국가 기관을 통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단, 라오스의 법령에 명시된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

나. 토지관련법령의 내용

(1) 토지에 대한 권리

○ 라오스 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다만, 라오스 정부는 중앙관리를 통해 토지임차권, 토지양허권, 토지사용권을 개인, 법인 또는 국가기관에 배분하고 있음.\

(2) 토지 임차권 및 토지 양허권

○ 라오스에 거주 및 투자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거나 양허권을 취득할 수 있음(토지법 제64조).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국인으로 부터 임대를 받을 경우 토지가 위치해 있는 지방 또는 도시행정 조직의 권고에 따라 국가토지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토지법제64조).

(가) 토지 임대 및 양허 기간(토지법 제65조)

○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토지의 임대 또는 양허 기간은 사업의 특성,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정해짐. 기간은 일차적으로 5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부의 개별적인 판단 하에 연장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을 경우 기간은

일차적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양자의 합의와 국가토지관리부의 승인 하에 연장이 가능함.

○특별경제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임대기간은 7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연장이 가능함.

○10,000 헥타르의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 또는 양허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함.(나) 토지 임대 및 양허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거나, 양허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라오스 현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는 토지법상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짐.

- 토지 임대계약 또는 양허계약과 관련한 개인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 다만, 정부에게 우선구매권이 주어짐.
- 토지 임대계약 또는 양허계약과 관련한 개인재산을 은행 또는 기타 라오스 내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고정자산의 경우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
- 토지임대권을 전대할 권리가 있음. 단, 정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대기간은 원 계약의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 및 양허권 계약 기간에 한하여 토지를 상속할 수 있음. 법적 상속인이 기존 임대계약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하는 개념임.
-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임대계약 또는 양허계약을 제 3자와의 거래에서 자본출자로 사용 가능함

○토지를 임대하거나 양허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가 따름 (토지법, 제67조).

i. 토지를 허용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ii. 토지 품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연 또는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iii. 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iv. 불가피한 상황은 법에 따라 응하여야 함.

v. 임대료, 양허료 및 토지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함.

vi. 토지와 관련된 규정과 토지 임대 또는 양허와 관련된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3) 토지사용권

○토지법 제53조상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에는 토지를 보호할 권리, 토지를 이용할 권리, 토지를 용익할 권리,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권리 및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줄 권리가 포함됨. 결국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서, 토지사용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하나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Right t○Use Land)와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토지사용권은 투자기간에 따른 기간제한이 있는 토지소유권임.

(가) 토지사용권에 따른 권리

○토지사용권에 포함되어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1) 토지를 보호할 권리: 토지를 보호할 권리는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로서 토지를 특정 목적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4조).

2) 토지를 이용할 권리: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정부의 토지분배계획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필요성에 따른 특정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5조).

3) 토지를 용익할 권리: 토지를 용익할 권리는 토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즉 임대료나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배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6조).

4)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권리: 토지사용권을 이전할 권리는 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이전하는 것을 말함(토지법 제57조).

5)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줄 권리: 토지사용권을 상속해 줄 권리는 토지사용

권 보유자의 사망 시 법에 따라 보유자의 남편 혹은 아내, 자녀, 부모 또는 친척에게 상속해 주는 권리를 말함(토지법 제58조).

(나) 토지사용권에 따른 의무

○토지사용권을 보유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제60조).

- 토지를 허용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토지 품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연 또는 사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제 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 불가피한 상황은 법에 따라 응하여야 함.
- 토지와 관련된 수수료를 완납하여야 함.
- 토지세, 토지이전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토지이전 및 등록 시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적시에 지불하여야 함.
- 토지와 관련된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외국인투자자의 토지사용권 취득가능여부

○라오스 토지법상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에 대한 토지 임차권만 허용되어 왔음(토지임차권은 위에 설명하였듯이 토지법 제66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만 행사할 수 있음).

○토지사용권 취득은 라오스 국민에게만 허용되어 왔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이제 토지사용권 취득이 허용됨.

(라) 토지사용권 수여기관 및 취득절차

○토지사용권(토지 임차권・양허권 포함)은 국가토지관리부(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수여 받을 수 있음(토지법 제10조).

(마) 토지 등기 절차

○라오스 토지법상 토지등기는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인증 받는 절차를 의미함(토지법 제43조). 토지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이 증명되고, 토지 등기인의 성명, 토지의 종류, 위치, 크기 등이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름.

○1단계: 토지를 등록하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토지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토지법 제5조상 토지등기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정부로부터의 토지배분증명서, 또는
- 토지이전 혹은 토지상속증명서, 또는
- 공증된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서(공증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이고, 비용은 대략 190,000 KIP 정도임)

○2단계: 토지등기 신청서가 관할지역 토지관리부에 전달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여부와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게 됨.

- 토지관리사무소에서 토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함.
- 토지법상 30일 이내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기간은 관할 토지관리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10일정도 소요됨.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여부가 확인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토지관리부 관리원은 토지를 측정하고 필지지도(Land Map)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뒤 중앙토지관리부에 토지등기를 위해 보내짐.

○3단계: 토지사용권 보유자로부터 또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행정조직으로부터 토지보증서(Certificate of Land Guarantee)를 취득함. 이 때의 소요기간은 1일, 비용은 총 60,000 KIP 정도 수준임. 농업토지 또는 산림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증명서(Land Certificate)를 준비하여야 함.

○4단계: 토지사용권 거래사항을 마을이장에게 통지함. 소요기간 1일.

○5단계: 토지등기부 기록을 변경함. 소요기간은 10일 정도이며, 비용으로는 신청비(30,000 KIP), 인지세(20,000 KIP), 양도세(토지가격의 1% 수준) 및 등록비(토지시가의 3%)를 지불하게 됨.

○토지등기부는 일렬번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게 됨(토지법, 제47조)

(ⅰ)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성명

(ⅱ)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생년월일, 국적, 직업, 주소 등

(ⅲ) 토지사용권 보유자의 부모 성명

(ⅳ) 토지번호

(ⅴ) 토지지도 및 코드번호

(vi) 토지분류, 토지의 위치, 경계선 및 면적

(vii)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viii) 토지사용권 일렬번호

○6단계: 토지등기권리증 발급절차로써 토지법 제49조의 요건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관리사무소에 신문 및 라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통지를 90일 동안 하여야 함.

- 공중에게 통보를 하는 수단으로서 90일안에 토지사용권 취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모두 해결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토지관리부는 토지등기권리증을 발급하게 됨.

-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은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빙서류임(토지법 제49조). 토지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뒤 토지사용권 보유자에게 발급됨.

다. 조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1)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감소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2004)에서의 조세혜택과 곧 시행될 예정인 통합투자촉진법(2009)상의 조세혜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상 구역별로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1구역: 7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는 10%의 고정세율이 적용됨.
- 2구역: 5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 3년간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15%의 고정세율이 적용됨.
- 3구역: 2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이후로 2년간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로는 20% 고정세율이 적용됨.

○ 예를 들어, 비엔티안 주에서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2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고, 면세혜택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10%의 감소혜택을 받게 되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이러한 면세 및 감세 혜택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며, 라오스 내 국인투자자의 경우 조세법 법인소득세 조항에 따라 35%의 세율이 적용됨.

○ 통합투자촉진법에서는 내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최소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승인절차가 예전보다 수월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지만, 조세와 관련해서도 내국인투자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될 예정임(면세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법에 따라 내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35%의 고정법인소득세율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다만, 곧 조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세율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비공식적으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소득

세율이 28% 수준으로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이는 공평한 조세처분을 통해 지금까지 불만을 호소해왔던 내국인투자자들을 대처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인 것과 더불어 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감소 및 철폐로 인하여 감소되는 국고수입에 대한 준비 및 대처라고 보여짐.

(2) 부가가치세제도의 시행여부 및 준수사항

○ 라오스는 ASEAN 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으로서 2015년까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차 감소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일반품목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잃게 되는 국고수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게 됨.

○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도에 제정되었지만 2009년 1월이 되어서 야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시도하였음. 하지만 당시 재무부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징수하기 위한 체제가 미비하였고, 불가 2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중지하였음. 금년 1월부터 재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재 도입되었음.

○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또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0%가 적용됨.

○ 연간 매출액이 400,000,000 KIP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3.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가. 투자촉진에 대한 정부정책

○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인지하고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아울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인지하고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투자촉진의 원칙으로 하고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5조).

나. 투자보호

○ 라오스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라오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헌법 제14조는 "국가는 국유, 공유 및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 및 국내 자본가의 사적 소유권과 라오스에 투자한 외국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를 촉진한다." 고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통합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음. 특히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모든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으며 라오스의 법과 규정 및 라오스가 맺은 국제조약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게 됨(통합투자촉진법 제60조).

○ 또한 통합투자촉진법은 정부가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로 압류 및 몰수하거나 정부소유로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의 투자를 인지하고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소유물 사용이 불가피 할 경우, 투자자는 시가에 따른 실제금액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4.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사실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라오스 법원 체제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중재절차를 일반적으로 선호함. 다만,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라오스에서 진행되는 조정 및 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2005년 발효된 경제분쟁해결법이 규율하고 있음. 분쟁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자가 해당 분쟁을 중재하도록 선택한 경우, 경제분쟁해결법에서는 당사자들이 3인중 2인을 경제분쟁해결소(Office of Economic Dispute Resolution, OEDR)에 소속되어 있는 중재자들 중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2인의 선택된 중재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경제중재위원회 중재 절차

○ 통합투자촉진법 제78조에 의하면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 화해 및 협상

○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서로의 상호이익을 위해 화해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여야 함(통합투자촉진법 제79조).

(2) 행정조치

○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기획투자부, 상공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의 역할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80조).

(3) 경제중재위원회

○ 협상이나 행정조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경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률규정과 상호합의하에 분쟁을 해결하게 됨(통합투자촉진법 제81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으로는 외국인투자허가증을 발급한 정부기관인 기획투자부에 중재를 요청하게 되어있고, 기획투자부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분쟁해결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ispute Resolution)에 분쟁해결을 요청하게 되어 있음.

(4) 법정소송

○분쟁 해결의 결과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통합투자촉진법 제82조).

나. 국제 중재 절차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정을 서명하였음.

○라오스 계약법(1990)상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실무관행상 라오스 정부는 이와 같은 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2005년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석에 의하면 외국 중재에 관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음.

○외국중재판정이 라오스 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함. 다만, 라오스 법원이 이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함. 라오스 법률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은 다음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라오스 법률상 인정될 수 있음:

1. 중재판정은 뉴욕협정의 회원국가에서 내려져야 함.

2. 분쟁은 라오스의 OEDR에 제출될 수 있어야 함.

3 중재판정은 라오스의 법률 및 규정 및 달리 공공질서나 윤리에 반하지 않아야 함.